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 비리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악한 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자가 악한 것이다.

한번쯤이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그동안 해온 것이니까 문제없다는 일방적인 생각,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비리를 만듭니다.
악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스포츠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포츠의 발전을 막는 암적 요소인 스포츠 비리 –
함께 감시하고, 함께 막아내어
스포츠계가 모두 함께 도약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스포츠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스포츠는 **정정당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깨끗**하고 **투명**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4대 주요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한 여섯 번째 국가이자 2016년 리우올림픽대회 종합 8위를 달성한 스포츠강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과 약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체육단체의 조직사유화, 횡령(배임),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입시비리, 도핑 등 그동안 대한민국 스포츠가 쌓은 수많은 업적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3년 5월 태권도 편파판정에 항의하면서 피해선수의 아버지가 끝내는 목숨까지 버린 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으로 '스포츠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개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대책 발표', '체육단체 재정 투명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4대악을 포함한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스포츠 비리 사례집」은 비리 유형별로 사례를 제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치한 사항과 사전 비리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서 제시된 실제 비리의 유형은 대한민국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자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것입니다.

스포츠의 핵심적인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와 함께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도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사례집 발간을 준비하고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선수들의 실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체육계 관계자 여러분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 윤 선**

Part 1

스포츠 비리의
현황

스포츠 비리, 생각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스포츠 비리,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생하는
스포츠 비리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비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상보다 그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가 느껴집니다.

(단위 : 건수)

구 분	조직 사유화 (횡령 · 배임포함)	폭력 (성폭력 포함)	입시 비리	승부조작 (편파판정 포함)	기 타	총 합계
조사 중	95	3	9	21	121	251
종 결	90	11	6	27	102	236
종 결 (수사의뢰)	1		1	1	11	14
종 결 (처분요구)	18	7		20	28	73
종 결 (수사 후 검찰송치)	1			1	4	6
총합계	205	23	16	70	266	580

2016. 6.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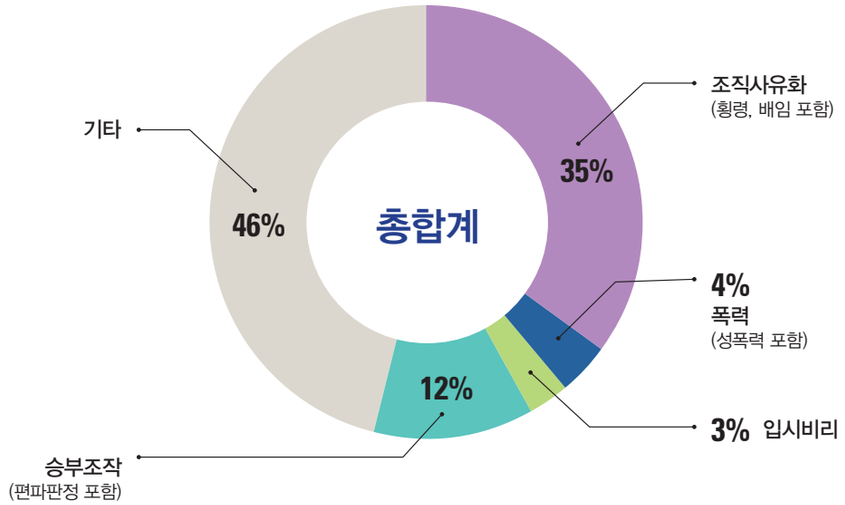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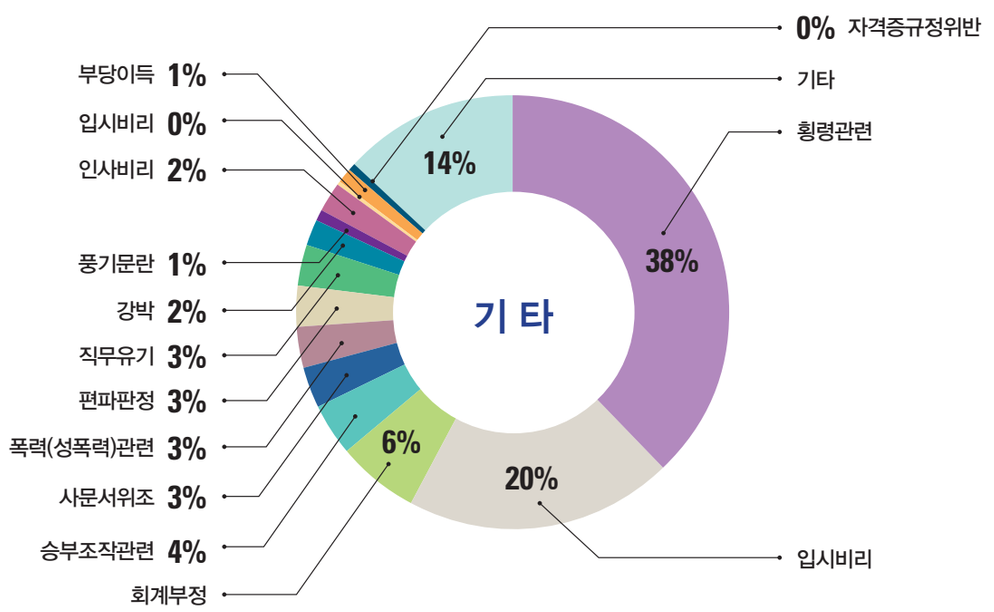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 비리, 숨기면 더욱 커집니다. 쉬쉬할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십시오.
한순간의 결심이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 설치개요

- 설치목적 : 스포츠계 부정 및 비위의 신속한 척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설치시기 : 2014년 2월 ~
- 설치장소 : 올림픽역도경기장(우리금융아트홀 1층)

▶ 연 혁

-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 발표('13. 10월)
-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개설('14. 2월, 보도자료 배포)
  - 문체부 감사실, 공단 감사인원 등의 출장을 통해 내부적으로 운영
-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제보자 포상금 지급('14. 3월, 보도자료 배포)
-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공익사업적립금 사업 진행('14. 6월 ~ 12월)
  - 검찰 서기관 파견, 경찰 및 예금보험공단 등 조사인력 증원
-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중간결과 발표('14. 12. 28)
  - 주요 적발사례, 체육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4대악 신고센터 향후 운영계획 등
-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훈령제정 및 명칭 변경('15. 6월)

▶ 접수처리 현황

-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접수건수 (주 평균)	조사 중	처리결과(종결)				비 고
			수사의뢰 검찰송치	처분요구	자체종결	계	
'14년	274(5)	85	10	46	133	189	
'15년	197(4)	78	10	26	83	119	
'16. 6 현재	84(4)	68	–	1	15	16	
합 계	555	231	20	73	231	324	580

2016. 6.10 기준

▶ 인력운영

- '16년도 현재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현황

연 번	이 름	직 위	소 속	역 할	비 고
비상근	○○○	과장	체육정책과	업무총괄	
1	○○○	전문위원	–	업무조정, 외부협의	
2	○○○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업무	
3	○○○	차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업무	파견
4	○○○	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사항 접수	파견
5	○○○	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업무	파견
6	○○○	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업무	파견
7	○○○	대리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업무	파견
8	○○○	주임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업무 보조	근무지정
9	○○○	일용직	–	행정보조	

※ '14. 2~'15. 6월 말까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으로 17명 운영(검찰청 수사관 1명, 문체부 2명, 공단 6명, 경찰청 6명, 예금보험공사 2명)

▶ 현황 분석

- (제보건수) 신규 제보건수는 '15년 이후 매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제보접수가 증가세에 있음
- (종결비율) 신고센터에서 제보접수 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 면담, 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의 비협조 등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종결처리 건수는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비리사례 세부 집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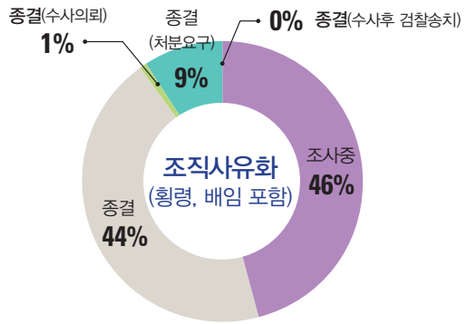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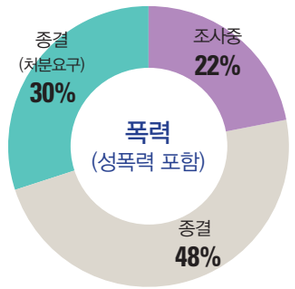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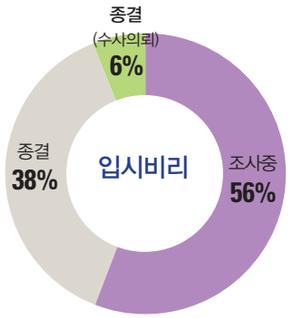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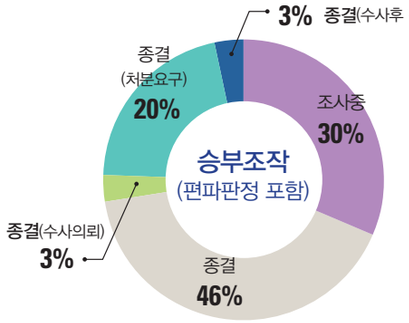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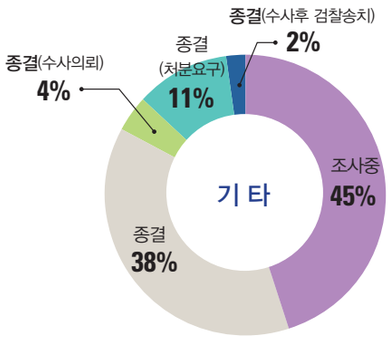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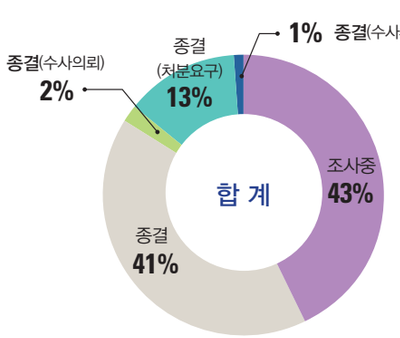

스포츠 비리 신고 방법, **어떻게 하나요?**

신고 대상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성)폭력,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임직원 비리 등 조직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

신고 방법

온라인	익명 신고	성명 기재하되 익명을 보장하며, 신고제목, 신고이유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민원마당 → 스포츠 비리 신고 → 실명 신고 / 익명 신고
	실명 신고	인터넷 본인 인증 후 신고 신청서 작성	
전자 메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파일을 다운, 작성하여 메일전송 18997675@korea.kr	
전화		스포츠 비리 신고 및 관련 궁금 사항에 대한 문의 가능 ☎ 1899-7675	
FAX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파일을 다운, 작성하여 팩스전송 ☎ 02-410-1629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역도경기장 내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실명신고)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높고, 조사 기여도, 비리 행위의 영향력, 재도 개선으로 연계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경징계일 경우 포상금 100만원 내외
- 중징계의 경우 포상금 200만원 내외
- 형사처벌 등 강력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300만원 내외 지급

신고자가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받지 않을 수도 있음

Part 2

스포츠 비리의

유형별 사례

01

조직사유화

조직사유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여러 비리들 중에서 조직사유화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사유화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각종 비리도
하찮게 여기는 안일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안일함은 조직의 부패와 무능으로
이어지고, 결국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과 같은 조직으로 변하게 합니다.
조직을 사유화 하는 일,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스포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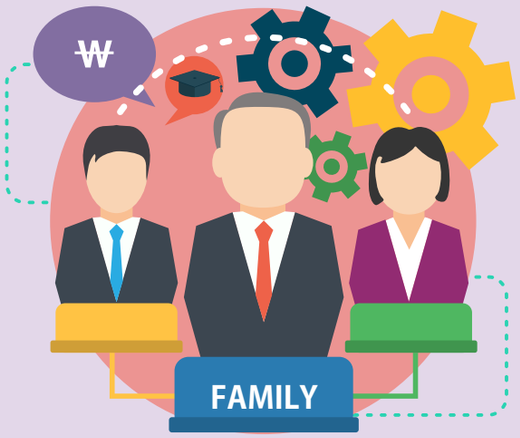

▶ 조직사유화 관련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재산상 이득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부정한 방법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총액의 5배 이내 제재부과금 징수

- **대한체육회 〈정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규정〉,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 임원의 구성 비율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여 임원구성 시 친인척 및 특정학교 등의 비율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 제2항 (징계의 정도 결정)**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조직사유화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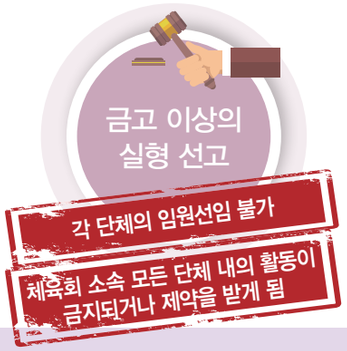

case 1

스포츠 4대악 중 조직사유화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4대악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총 415건 중 조직사유화에 관한 사례가 113건(2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부 시 · 도체육회의 경우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면서 장기재직하기도 하였다.
- OO시 OO협회는 회장이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측근들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전임 회장 등(27명)에게 상임고문, 명예회장 등 비상임 직위를 부여하고 활동비(매월 30~400만원)를 지급하면서 조직을 관리하였다.
- OO협회 등 4개 단체에서는 자녀를 선수로 둔 단체장이 선수 선발과정이나 훈련비 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임원 28명과 전문위원 19명 등 절반 이상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대한OO회는 특정학교 비율 제한의 개선 명령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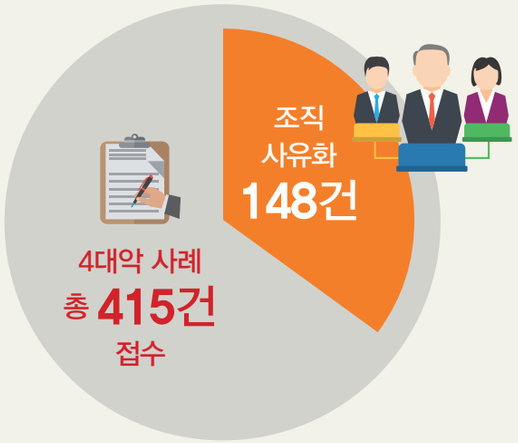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조직 사유화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임원이 전체의 20% 이상이 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음. 또한 임원의 인준권한을 이용하여 더 이상 이러한 가족단위의 조직 사유화가 없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2

끼리끼리 **10년** 이상 **나눠먹기**, 온갖 **비리** 서로 **덮어주며 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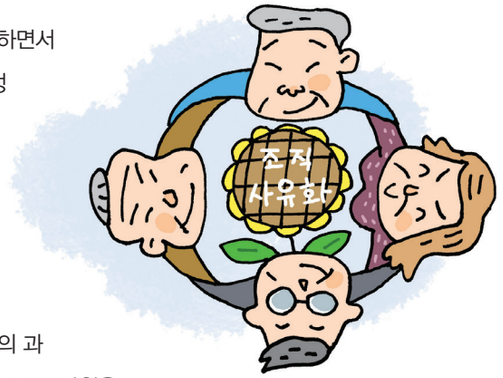

대한OO연맹의 임원들은 10년 넘게 연맹 간부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 선발, 연맹 임원 선임 등에 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 15년 동안 근무한 전무이사 A씨를 중심으로 총무이사 B씨 14년, 시설이사 C씨 14년, 홍보이사 D씨 14년 등 학연, 지연, 선후배 관계 등으로 뭉쳐 파벌을 형성하였고, 연맹과 지역연맹을 장악하여 해당종목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A씨는 연맹 임원 및 감독 선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의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B씨 등 임원 3명으로부터 총 4억 5,0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총무이사 B씨, 시설이사 C씨, 홍보이사 D씨의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횡령 혐의도 함께 포착되었다. 허위 훈련계획서를 통한 공금 횡령 과정에서 회계 장부에 '3월 3일'이라고 적을 것을 '3월 33일'로 쓰고, '2012년'을 '20012년'으로 썼는데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지급내역만 세밀하게 점검했어도 적발이 가능한 것이지만, 사유화 된 조직에서 이러한 감사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 연맹은 올림픽공원 내 시설을 국가대표들이 사용한다고 속이는 공문을 보내어 특정 임원이 열고 있는 클럽회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공공기관을 기망하기도 하였고, 2013년에는 일부 선수들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영구제명을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이들을 풀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감독은 자신의 감독직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에 상납하는 등 조직사유화에 따른 폐해가 극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들 임원들이 연맹 조직을 사유화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연맹의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각종 훈련비, 선수급여, 지원금 등을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및 관계부처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적 비리가 가중될 수 있었다. 또한 임원들은 내부 연맹 일에 무관심하였고, 이사회나 감사의 통제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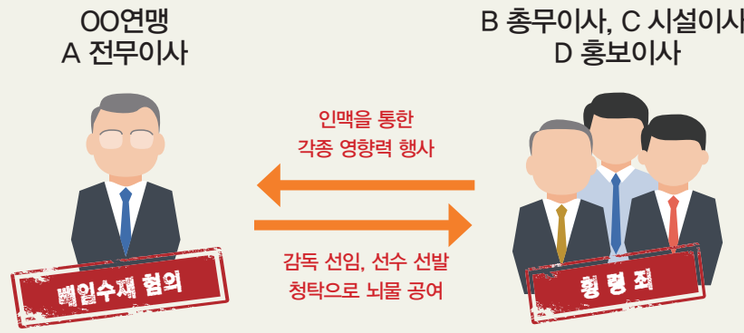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문이사 A씨는 징역 3년과 4억 3,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이사 C씨는 징역 3년과 4억 2천 950만원을, 총무이사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보이사 D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 100만원을 선고.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역연맹 관계자들 4명에 대해서도 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 500만원~2천 200만원을 선고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체육회장에게 해당 사건의 비리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였고, 동 사례의 비리자 8명 전원은 2016년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단체에서의 '제명'으로 확정됨.

*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고,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동 사안은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추가로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3

일가족이 가담한 **훈련수당 횡령**, 일가족 **모두**에게 **징역형** 선고

대한OO연맹의 전(前) 회장은 오랫동안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을 사유화하여왔다. 아버지는 회장으로, 딸은 부회장으로, 2명의 아들은 연맹 임원으로 재직시키는 등 마치 연맹을 가족조직처럼 운영하여 오다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06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선수들로부터 갹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억 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체 티셔츠나 메달을 맞추면서 대금을 부풀려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부회장 B씨의 동생들을 지도자로 허위 등록시켜 지도자 수당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큰 아들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전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 대부분 훈련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으며, 작은 아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원을 받았다.

결국 1심에서 아버지이자 전(前) 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前) 부회장이자 딸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전 임원이었던 두 아들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른바 조직 사유화는 체육단체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측근을 대거 기용하여 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사회나 감사, 총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측근이어서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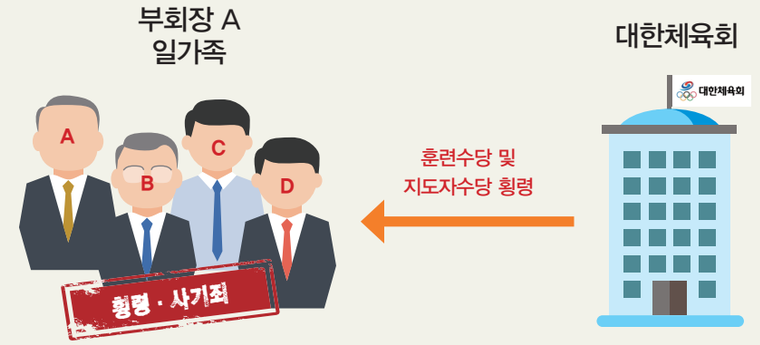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업무상 횡령 ·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OO연맹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와 함께 범행한 아버지이자 전 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임원인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 동 단체는 대한체육회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오다가 내부 불화로 거의 3년 동안 정상화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2016년 8월에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에서 영구 제명됨.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조직 사유화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임원이 전체의 20% 이상이 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음. 또한 임원의 인준권한을 이용하여 더 이상 이러한 가족단위의 조직 사유화가 없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안의 경우도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추가로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4

연맹 **회장**은 **횡령의 왕**, **직원**은 **조력자**
차명계좌 및 유령회사로 **수억원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대한OO회의 A회장은 우리나라 OO계의 큰 스승으로 불리며 단체장을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시도협회 산하 지도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원받은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조직사유화 및 횡포가 심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수사결과 A회장과 OO회 사무처 직원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지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6억원에 대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은 순회코치수당, 심판수당 등을 63개 차명계좌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유령회사 3곳을 설립하여 OO연맹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약 4억 원을 횡령하였고, 트로피 등의 납품업체와 납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1억 3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과대계상' 수법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총 13억 4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자금 조성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으며, 조성된 비자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고가 차량 구입 · 자녀 유학자금 · 생활비 등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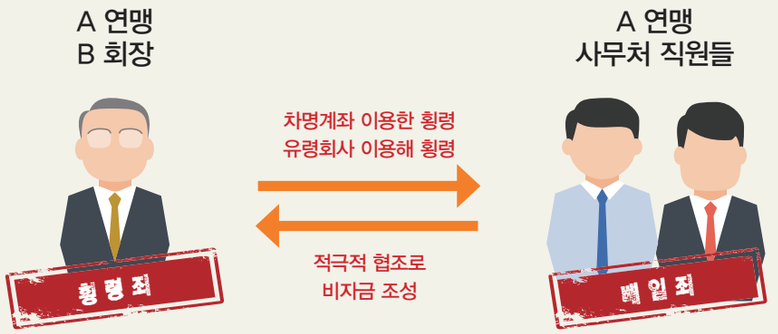

▶ 조치사항

* A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조 제1항 제2호(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부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음.

* 직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함.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동 사안의 경우도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추가로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5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내부 파벌싸움**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 승부조작 의혹 등 부실운영의 극치

대한OO협회는 2013년 선수뿐만 아니라 협회 임원까지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협회장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협회 내부의 파벌싸움과 규정을 무시한 임원 선임, 각종 수당 불법 지급,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승부조작 의혹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가 확인되었다.

대학의 선 · 후배 사이인 A실무부회장과 B사무국장의 파벌싸움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B사무국장은 협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상당수의 임원 및 직원들과 가까운 관계였으며, 심지어 내연녀의 딸로 알려진 C씨를 경리업무 담당자로 입사시키는 등 조직사유화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A실무부회장이 선임되면서 회장의 신임을 얻고, 협회의 업무에 관여하자 B사무국장이 본인을 따르는 세력에게 민원 제기를 지시하는 등 내분이 시작되었다.

한편, 실무부회장인 A는 회장이 임명한 뒤 대의원총회 임원 6인에게 임원인준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부회장은 체육회로부터 인준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협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적을 회복한다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실무부회장직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각종대회 임원 수당으로 5천 340만원을 지급받아왔다. 임원 인준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에 지급된 수당은 4천 620만원으로 무자격자에게 잘못 지급한 수당이다.

또한 특정 대회에서 대학 선후배 사이인 D심판위원장과 E심판장의 폭언 및 쌍방폭력행위가 발생하고, 특정 임원이 생산하는 경기용품을 사용하는 선수에게는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OO협회 심판의 공정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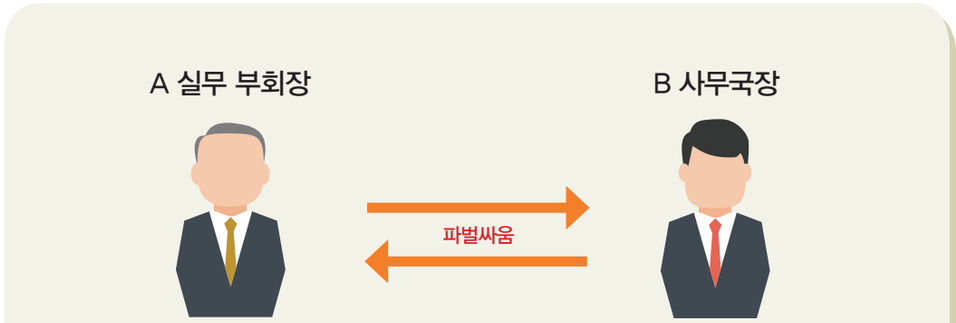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OO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가 확인되므로, 대한체육회장은 대한OO협회에게 징계 대상자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하도록 하였으며, 심판의 독립성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음.

* 대한체육회장은 대한OO협회장에게는 정관을 무시한 임원 선임 및 협회 부실운영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A실무부회장은 체육회 인준 미취득, 각종 임원수당 부당 수령 등의 이유로 체육회 인준 시까지 직무 정지 및 지급된 임원수당 환수가능여부 검토 후 환수조치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결국 A부회장은 직위정지, B사무국장은 직위해제, D심판위원장은 3년간 협회 관련 업무 종사 금지, 허위공문 발송 관련 직원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됨.

* 동 사안의 경우도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추가로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6

관리단체라는 **불명예**는 **뒷전** 온갖 **내부비리**로 협회는 **부실운영**

대한OO협회는 B 전(前) 회장이 사퇴하고 관리단체로 지정된 이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파벌조성 및 조직사유화, 금품비리, 밀실행정 및 부실운영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B 전(前) 회장의 지지, 신임 등으로 협회 회장이 된 A는 지연, 학연 등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각 종목별 위원장 및 이사로 선임하고, 국가대표 감독, 코치 및 선수 선발에 적극 관여하는 등 파벌 조성과 조직사유화로 OO협회의 내분과 민원을 야기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시에는 해당종목 출전경험이 없는 특정대학 제자들을 선발하여 국제대회에 출전시켰으나, 해당선수들은 경기복장 위반과 주행부족 등으로 실격을 당하는 등 제대로 된 경기를 한 번도 하지 못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이에 A의 대학 선배들이면서 협회의 부회장을 맡은 C, D는 후배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협회의 집행권한 전횡, 조직 사유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또한, 협회 이사는 2009년 일본 및 2010년 호주 전지훈련 후 정산서류를 위 · 변조하는 수법으로 정산금액을 부풀려 불명확한 증빙서를 제출하는 등 5천 4백여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협회 감사는 불명확한 증빙서류를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임의대로 판단하여 횡령금액을 대폭 삭감하여 3백 8십여만원(환수 · 인정금액)만을 횡령한 것으로 처리한 후,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경고'처부만 하였다. 협회는 위와 같은 사실(정기대의원총회 시 지적)을 인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해 반드시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 징계처분 한다고 은폐하였다.

전(前)국가대표 감독 E 역시 2008년 캐나다, 2009년 뉴질랜드, 2010년 미국 전지훈련 정산서류를 위 · 변조하는 수법으로 정산금액을 부풀려 불명확한 증빙서를 제출하는 등 1억 4천 8백여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협회 감사는 불명확한 증빙서류를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임의대로 판단, 위 · 횡령금액을 대폭 삭감하여 2천 3백여만원(환수 · 인정금액)만 횡령한 것으로 처리한 후,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자체 징계(자격정지 1년 6개월)처분만 하였다. 이 역시 협회는 위와 같은 사실(정기대의원 총회 시 지적)을 인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해 반드시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 징계처분만 하고 은폐하였다.

▶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A회장이 임명한 공금횡령 위원장과 감독을 사법처리하며, 협회 임원 및 지도자 선임 금지. 국가대표 감독 및 선수들에게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OO협회에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
  - 파벌 싸움 관련자 및 금품비리 전과자 등에 대해서는 문제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앞으로 협회, 연맹, 지부 임원 선임을 제한해야 함.
  - 향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고발대상자 발생 시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해야 함.
  - 또한 전문성과 원칙에 입각하여 임원, 지도자, 선수를 선발해야 하며, 각종 대회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철저히 해야 함.

* 동 사안의 경우도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추가로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7

협회를 **개인회사**로 **취급**
기업후원금, 협회 운영자금을 서슴없이 **손댄** 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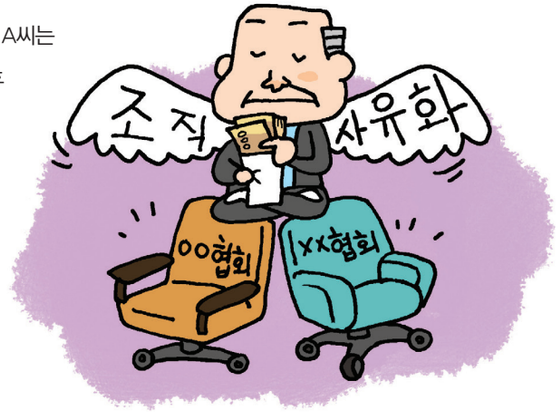

대한장애인체육회 OO협회 전(前) 회장이었던 A씨는 국제대회가 끝난 후, 기업들로부터 받은 행사 후원금 잔액 5,8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비리신고센터에 적발되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무국 직원에게 500만원씩 두어 차례 현금을 가져오게 하여 증빙서류나 내부 결재 없이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어 모두 환수조치 하였다. 회장의 이러한 행태를 본 사무국 직원들도 공모하여 후원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고 환수하는 등 내부기강의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A씨는 대한체육회 OO협회 회장도 겸직하고 있었는데, 외부 자금 차입을 통해 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상 외부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사회와 총회 결의 및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단독으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또한 추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직원에게 협회 돈 수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게 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하거나 그림을 샀다. 그리고 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다음 집행부 공백기간을 이용하여 협회직원을 개인기사로 쓰거나 협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차량의 기름을 넣는 등 수백만원을 횡령하였다.

이 밖에 회장직을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사무처장에게 지시하여 미국에 있는 생활체육단체장에게 본인을 협회장으로 새긴 감사패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번 사례는 준 공공단체인 체육단체의 회장직을 복수로 겸임하면서 마치 자신의 개인기업인 양 조직을 운영한 대표적인 조직 사유화 사례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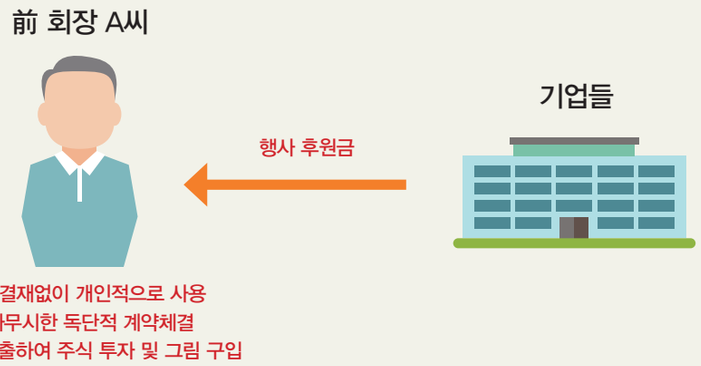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OO협회 전 회장이자 대한체육회 전 회장 A씨 등 관련자에 대해 OO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대한체육회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촉구함.

* 결국 A씨는 최근 2016년 9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명이 확정되어 더 이상 스포츠계에 발 붙일 수 없게 되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OO협회 사무국 직원들은 퇴사처리, 대한체육회 OO협회 사무처장은 파면을 당함.

* 동 사안의 경우도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추가로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8

명예회장은 **횡령** 및 **업무방해**, 임원은 **허위문서작성 지시**, 직원은 **허위문서 작성**

OO연맹의 前 명예회장 A씨는 연맹의 회장 등 임원으로 재직 시 다수의 횡령의혹과 연맹 업무방해의 행위가 있었다.

A씨는 1997년~2011년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연맹의 호텔 및 항공권 구입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개인이익을 추구('05년 국제대회 숙박비 및 식비 약 4천 6백만원 횡령)하였고, 2010년 연맹 용품 계약에 따른 계약 세부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500만원의 반납요구를 무시하였으며, 1997년~2009년까지 활동비 및 국제회의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2억 1천 백여만원의 개인이익을 취하여 국제연맹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연맹임원의 검찰 고발, 과도한 민원제기, 허위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연맹에 대한 음해로 연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왔다.

임원 B씨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자신의 딸을 유명 대학에 편입시키기 위해 허위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받은 부하직원 B씨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고발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B씨는 자신의 딸을 미국의 유명 대학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OO연맹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인턴 관련 경력이 있으면 딸의 편입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영어에 자신이 없었던 B씨는 연맹 사무국 국제 업무 담당 부하직원 C씨에게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턴예정문서의 전무이사 서명은 공문작성 시 삽입하는 전무이사 서명파일을 C씨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연맹은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었고, 인턴예정문서도 B씨의 딸이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허위문서를 작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연맹 임원 B씨와 임원의 부당한 지시에 내부보고 없이 임의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전문이사의 서명을 도용한 직원 C씨는 허위증명서 발급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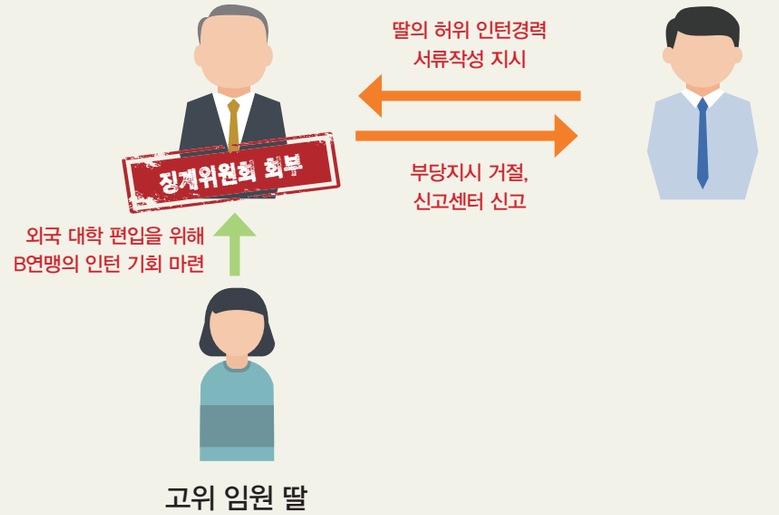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장에게 대한OO연맹회장으로 하여금

– 명예회장에 대한 횡령 등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미 이행된 계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음.

– 인턴예정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연맹 임원 A씨와 부당한 지시에 내부보고 없이 임의로 인턴예정문서를 작성한 B씨에게 "징계" 등의 적의조치를 지시함.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02

배임/횡령

나 하나쯤이야, 내가 누군데 –

이런 안일함이 스포츠계를 망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배임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예산이나 물자들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비리들 중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특권의식이 우리 스포츠계 전체를
망쳐버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계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범죄입니다.

▶ 배임/횡령 관련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재산상 이득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부정한 방법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총액의 5배 이내 제재부과금 징수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 제2항 (징계의 정도 결정)**

가.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배임/횡령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

–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징수 ⇒ 관련자 경찰 수사 및 검찰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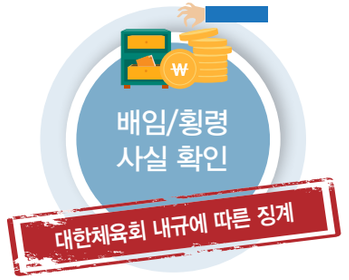

case 1

전화로 5~6회 **지도,** 대회 시 **훈련 상황만 체크,** 훈련결과보고서 **허위 작성**하여 **수당 부당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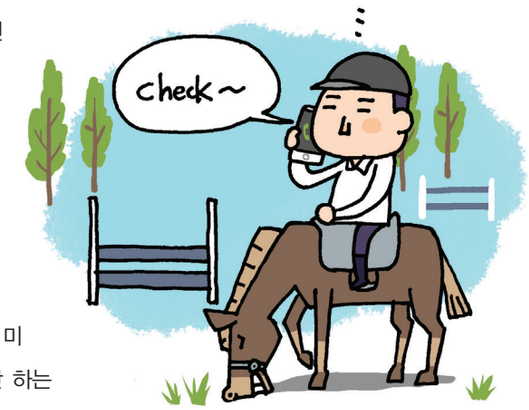

대한OO협회 국가대표 A코치와 B코치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국가대표 선수 8명의 촌외훈련 순회코치로 선임되어 코치에게 지급되는 코치수당, 경기력향상 연구비 등을 협회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런데, A코치는 전체 훈련기간 동안 훈련장 방문지도는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5~6회 지도하였으며, 지도 대상 선수가 대회 출전 시에 몇 차례 미팅을 통해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훈련 상황 체크만 하는 등 선수 지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최소 24일에서 29일까지 총 233일 지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 서명한 훈련결과보고서를 협회에 매월 제출하였다.

B코치 역시 전체 훈련기간 동안 총 2~6회 정도의 개별훈련장 방문 시 그리고 대상 선수의 대회 출전 시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훈련 상황 체크만 몇 차례 하는 등 선수 지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최소 22일에서 29일까지 총 233일 지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 서명한 훈련결과보고서를 협회에 매월 제출하였다.

협회 사무국 담당자는 동 촌외훈련 기간 동안 수시로 훈련 현장 점검을 하고 해당 선수들과 면담하는 등 국가대표선수 훈련실태를 점검하여 해당코치들이 제출한 훈련결과보고서의 사실유무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훈련일지를 근거로 하여 A코치에게는 9개월분의 코치수당 2천 970만원, 경기력향상 연구비 719만원 및 훈련비(식비) 659만원 등 총 4천 347여만원을, B코치에게는 9개월분의 코치수당 3천 770만원, 경기력향상 연구비 719만원 및 훈련비(식비) 659만원 등 총 5천 147여만원을 지급하여 총 9천 494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하였다.

▶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하여 대한OO협회장에게 국가대표훈련지침 및 국가대표 훈련 수당지급 기준을 위반한 A코치와 B코치에게 지급한 코치수당, 경기력향상 연구비 및 훈련비(식비) 총 9천 494여만원을 회수 · 반납하도록 하고 동 코치들에게는 중징계처분을 요구함.

* 또한 협회 사무국 사무차장에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협회 사무국 사무차장에게는 문책을 요구함.

* 동 사안의 경우도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추가로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2

심지어 **불법 카드깡**까지 해가면서 **선수 훈련비용**을 **횡령**한 국가대표 감독

OO종목 국가대표 총감독을 맡고 있는 A씨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비용을 횡령하여 검찰에 기소되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국내 촌외훈련 및 국외 전지훈련 시 지급되는 지원금 및 기타 비용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A감독은 2011~2013년 태국 촌외훈련 체재비 약 2억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2009~2013년 숙박비, 식사비 등을 부풀려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속칭 카드깡 형식으로 약 4억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A감독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훈련비용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은 A감독이 목적과 다르게 개인용도로 비용을 사용하였으므로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 조치사항

* 대한OO연맹 등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인 A감독 등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조치 실시(관계자 9명에 대해 경찰청 수사 후 검찰 송치)

* 직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함.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상 보조금을 모두 반드시 카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1차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3

우수선수를 위한 **지원금** 1억 5천만원, 협회 임원이 선수도 모르게 **중간 착복**, 그 임원은 **조폭출신**

대한OO협회 OO시 협회 전무이사인 A씨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소속 선수들에게 지급된 '우수선수 관리지원금'을 착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체육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스포츠 4대악 척결' 수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전무이사 A씨는 OO시 체육회에서 선수들에게 지급된 '우수선수 관리지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선수들 몰래 우수선수 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들에게 "전국체전 참가비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과 도장을 받은 후 입금되는 지원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했다.

'우수선수 관리지원금'은 OO시 체육회가 각 종목별 협회로부터 우수선수를 추천받아 OO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금액은 선수별 경기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A씨는 선수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비밀번호와 도장을 함께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선수들은 자신에게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A씨는 선수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전무이사 A씨는 2012년 OO협회에서 지원된 중 · 고등학교 육성금 300만원도 횡령한 정황이 제보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993년 경, 지역 조직폭력배 '왕가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다. 2001~2009년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지만 별다른 제약 없이 협회 전무이사직을 맡아 행정을 총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선수들의 소유가 되어야 할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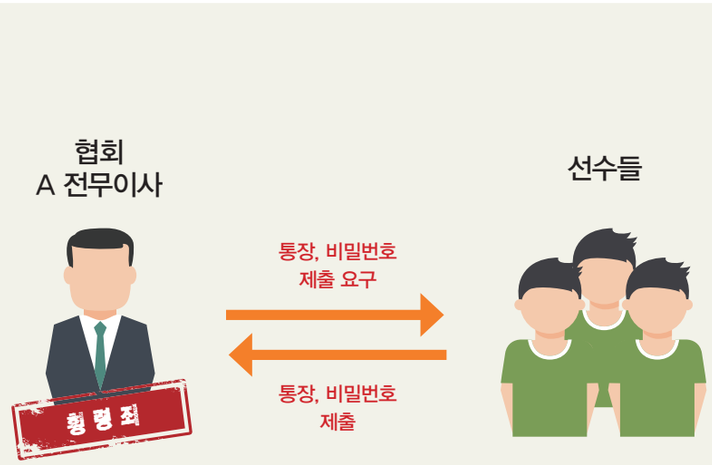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는 A씨를 경찰청 지능횡령죄로 수사의뢰검찰에 고발하였고, 경찰 수사 후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됨.

* 직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함.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상 보조금을 모두 반드시 카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1차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4

횡령 의혹 수사 받은 적 있는 임원, 또 횡령하고도 몰랐다고 발뺌

대한OO연맹 코치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A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OO시청 코치로 근무하면서, 훈련비 또는 대회출전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총 8천여만원을 횡령하였다.

또, OO시청 공무원 B와 공모하여, 우수선수 영입비용으로 쓰겠다며 OO시청과 관할 체육회로부터 4천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빙상장 운영자 C와 공모하여 빙상장 대관료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여 OO시청으로부터 8천 8백여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체육용품업자 D · E와 공모하여 훈련장비 등 물품대금을 많이 청구하여 OO시청으로부터 2천 856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OO시청 체육청소년과 공무원 B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씨로부터 자신이 소속한 운동부 지원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 330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우수선수 영입비용 편취과정에서 관할체육회에 보낼 지원금요청 관련공문을 허위로 작성 · 발송하여 행사하고, 체육용품업자 E와 공모하여 훈련장비 등 물품대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OO시청부터 63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OO시청은 실업팀 예산을 기능직 공무원 1명이 7년간 담당하는 동안 관리 · 감독이나 정기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무원 B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보상금'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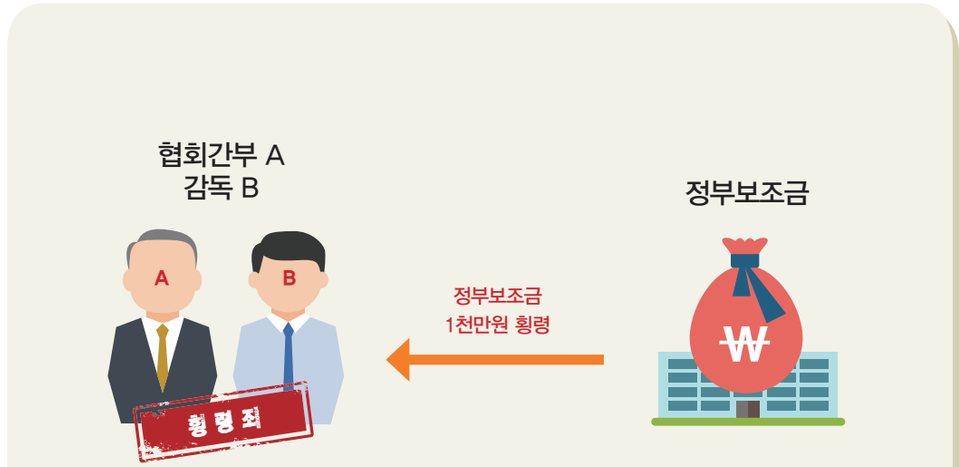

▶ 조치사항

* 4대악 신고센터 비리정황에 접수되어 사건 조사 후 경찰 수사를 거쳐 대한OO협회에서는 A씨를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는 A씨의 범죄를 확인, 기소.

* 직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함.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동 사안의 경우도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추가로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5

감정가보다 **수십억**이나 **비싼** 협회 **건물,** **따져보니** 부회장의 **횡령**

대한민국 OO협회는 강남에 협회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에 자립기금과 융자금 등을 합쳐 회관건물을 매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건물 값 180억원은 시세보다 수십억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협회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여 은행 융자금 113억원을 갚기에도 급급하여 선수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6년 8월 현재 동 건물의 시세는 14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에 이 협회 건물 매입사례를 대표적인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회관 건물 매입을 주도했던 부회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매입과정에서 브로커인 친형을 통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3천 200만원을 받은 부회장 1명을 기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3천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동 협회는 이러한 사유로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리우올림픽 때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부실한 지원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회관 건물 매입을 주도했던 부회장 2명을 검찰에 고발. 브로커를 통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3천 200만원을 받은 부회장 1명을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3천 200만원의 판결.

* 직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함.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동 사안은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1차 정산을 반드시 회계법인이 하도록 하여 1차로 거르게 하고 있으며, 2차로 체육진흥공단 등이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03

폭행/성폭행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
바로 폭행과 성폭행입니다

폭행이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폭행이 선수 간 위계질서 유지의 기본일 수 없습니다.
또한 성폭행은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일 수도, 애정일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도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폭행/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 제2항 (징계의 정도 결정)**

마. 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성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바.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선수, 지도자	•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도는 영구제명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폭행/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

case 1

자신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후배 폭행**, 그 **결과**는 금메달리스트의 **퇴출**

OO계의 유명 금메달리스트인 A선수가 술자리에서 B후배를 폭행하였다. 태릉선수촌 합숙 생활 중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것이 이유였다.

A선수는 B선수와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선수에게 이러한 문제를 질책하면서 주먹과 발로 B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그 결과 B선수는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따라 A선수는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로 인해 A선수는 2016 리우올림픽 출전도 좌절되었으며, 대한OO연맹도 선수자격정지 10년을 의결하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국민적인 영웅으로 올라섰던 A선수는 선수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OO계에서 퇴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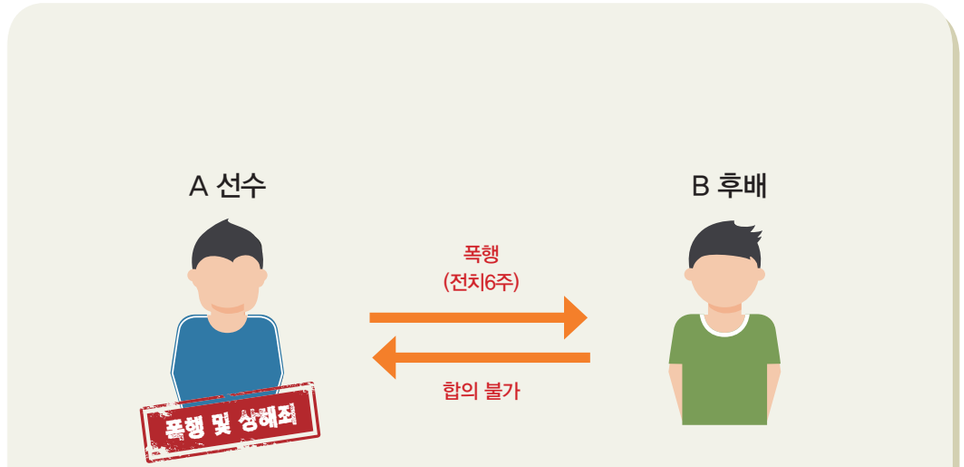

▶ 조치사항

* A선수는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체육회장에게 OO연맹으로 하여금 폭력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여, 선수 자격정지 10년으로 사실상 OO계에서 퇴출.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폭행)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2

홧김에 실수한 후배 얼굴 가격, 본인은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출전정지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후배 발에 걸려 넘어진 선배가 홧김에 욕설과 함께 후배의 얼굴을 가격했다.

사건은 태릉선수촌 OO에서 열린 남자 OO대표팀 훈련 도중 일어났다. 총 8명인 남자 대표팀은 한 명씩 교대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고참급 선수 A가 막내 선수인 B에 걸려 넘어졌다. 당황한 B는 넘어진 A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A가 욕설을 하며 B의 얼굴(좌측 턱)을 한 차례 때렸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부상으로 고생하던 A는 넘어지면서 같은 부위를 다시 다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처음 대표팀에 합류한 B는 턱과 잇몸 등에 염좌진단을 받았고 이후 17일 휴식 후 복귀하였다.

사건 당시 훈련장에는 남자 선수 · 코치는 물론이고 여자 대표팀 선수들도 있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영구제명까지 징계가 가능하였다.

대표팀 선발을 앞두고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대한OO연맹에서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경고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스포츠 4대악에 대한 관용 없는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대한OO연맹에서는 A선수에 대해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출전정지 1년을 의결하였다

동 폭행 선수는 1년의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았으나 하마터면 평생 꿈꾸어오던 국가대표 자격을 한순간에 잃을 뻔하였다. 이는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일이라 이 정도 징계에서 끝났지만, 현재의 징계기준으로 징계한다면 몇 년간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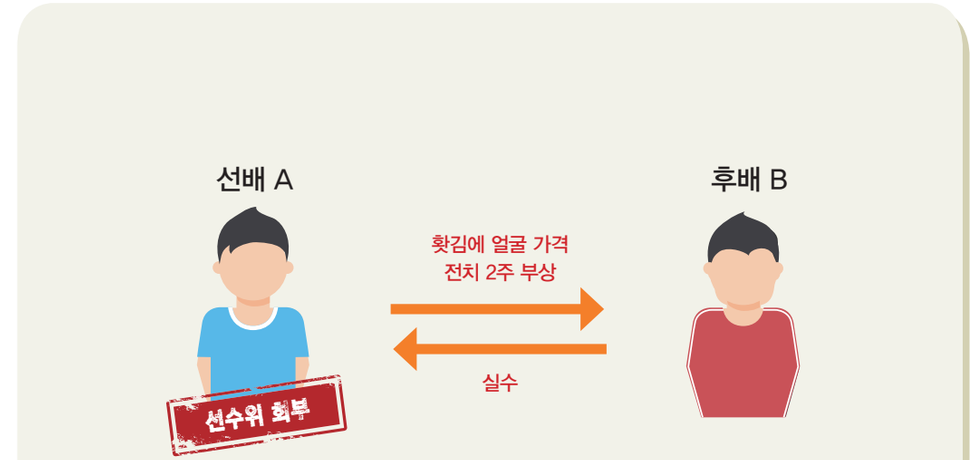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조사결과 대한OO연맹에서는 1차 경고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 4대악과 관련된 사항의 강한 제재 요청으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출전정지 1년의 재징계 조치를 함.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폭행)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3

후배 **상습 폭행** 및 **추행**한 선배, **유망**하다는 **이유**로 이례적 **벌금형**

운동부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OO선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례적인 선처라는 지적과 소년범임을 고려한 합리적 처분이라는 법조계의 주장이 엇갈린다.

OO지법 형사12부는 강제추행 · 공동상해 · 공동강요 · 강요 ·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OO선수 A군과 B군에게 각각 벌금 25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OO 지역의 한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과 B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선후배 사이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OO부 후배들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위바위보에 진 후배의 옷을 벗기고 신체 특정 부위에 스프레이형 파스를 뿌리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C군과 D군에게는 청양고추 등을 잔뜩 넣은 상추쌈을 만들어 먹이는 '음식고문'도 자행했다. 후배의 신체를 더듬거나 중요부위에 청소기를 들이대는 등 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에게 한쪽 귀를 맞은 후배 D군은 전치 1개월의 신경성 난청을 앓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 C군이 선수의 꿈을 접고 전학을 가는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A군과 B군만의 잘못이 아닌 운동부 내 악습이 대물림된 결과라고 봤다.

이 사건은 운동부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OO선수들에게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공동폭행 등의 죄질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선처라는 비판을 낳은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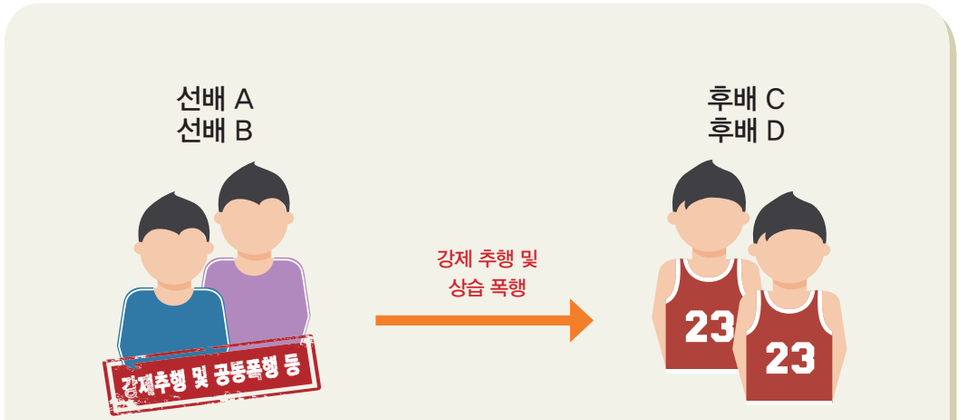

▶ 조치사항

* 강제추행 · 공동상해 · 공동강요 · 강요 ·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OO선수 A군과 B군에게 각각 벌금 2천 500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 학생선수는 폭력 등으로 인하여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 상급학교(대학 등) 진학을 하지 못하는 처분을 감수해야 하므로 한 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으므로 (성)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함.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폭행)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4

에어컨 켜고 잔다며 **선수**들 **무차별 폭행**, 해당 코치 **사전 구속영장 신청**

OO지역의 한 중학교 OO부 코치가 한밤중에 선수들을 폭행했다.

시합을 앞두고 몸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합숙소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잤다는 것이 폭행 이유이다. 이 코치는 새벽 2시 반쯤, 교내 합숙소에서 잠자던 선수들을 모두 밖으로 불러내 12명의 선수들을 엎드리게 한 뒤 1시간 반 동안 엉덩이를 때렸고, 선수 한 명이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도 폭행을 가했다.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진 폭행은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학교 측은 코치를 해임하였고, 경찰은 피해자가 많고 체벌의 도가 지나치다며 해당 코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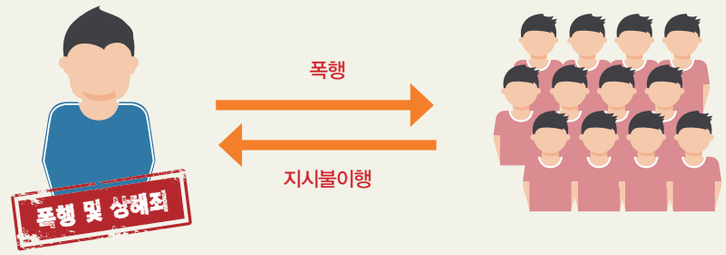

▶ 조치사항

* 피해자가 많고 체벌의 도가 지나쳐 해당 코치에 대한 해임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폭행)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case 5

납득할 수 없는 **선수 선발**, **불만 제기**하자 여선수 **폭행**

OO여고 OO부 B코치는 전국체전 선수선발 과정에서 당시 고3으로 진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던 A선수를 선발하지 않았다. A선수는 해당 년에 전국 규모 대회에서 7차례 수상한 경력(우승 6회, 개인전 우승 3회)이 있는 선수였으나 B코치는 A선수를 선발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B코치는 별 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선수는 B코치의 전국체전 대표 선수 선발 기준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A선수는 B코치의 선수 선발에 불만을 가져 이의를 제기하였고, B코치는 '열심히 하지 않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선발 탈락 이유를 일축했다.

이에 A선수는 정당하지 않은 선발운용을 납득할 수 없고, 고3인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진로에 크게 지장이 되어 운동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A선수는 B코치를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B코치는 A선수의 행동에 분개하여 '대가를 치루고 나가라.'고 하며 몽둥이로 A선수의 둔부를 수차례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A선수와 A선수의 가족 · 친지 등의 보호자들은 A선수를 입원조치하고, B코치를 폭행 및 상해죄로 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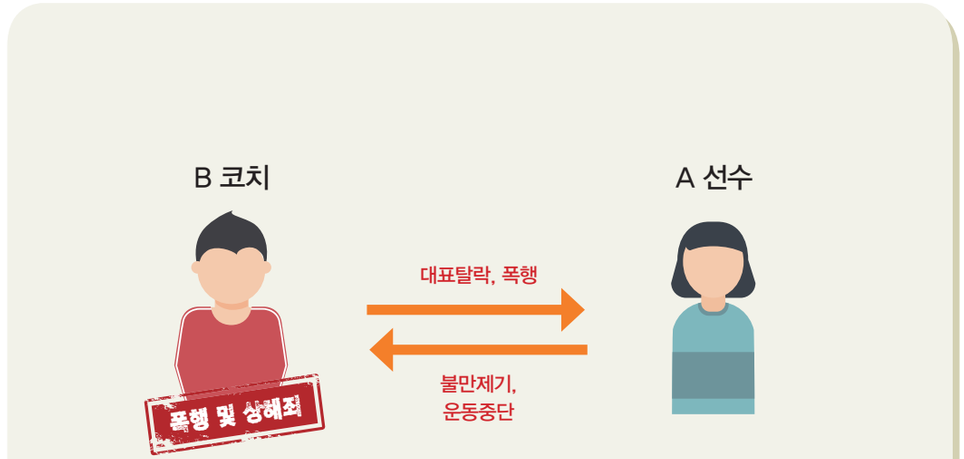

▶ 조치사항

* 피해학생 가족들은 B코치를 폭행 및 상해죄로 고발하였고, OO도체육회에서는 해당코치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조치를 내림.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폭행)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case 6

초등생 폭행 후 사건 은폐 시도, 게다가 불법 개인레슨 및 승부조작까지 강요한 코치

서울의 A초등학교 OO부에서 코치가 훈련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일과 시간 이후 선수들 중 일부에게 돈을 받고 불법 개인레슨을 자행하였으며, 2015년도 소년체전 서울대표 선발전에서 승부조작을 강요하였다.

A초등학교의 OO부 보조코치를 맡고 있는 B씨는 지난 10월, 3차례에 걸쳐 훈련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학년 C학생을 폭행했다. 운동용품으로 엉덩이 부위를 폭행했고, C학생은 엉덩이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오히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평소 C학생의 아버지가 폭행을 자주 한다."라며 폭행 혐의를 C학생의 부모에게 돌렸다. B씨와 사제지간이기도 한 전임코치 D씨도 B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B씨의 폭행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D씨 때문에 밝혀졌다. D씨는 지인과 통화 중 "B가 때렸다.", "우리는 끝까지 발뺌하면 돼."라며 폭행 사실을 언급하며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D씨는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사건이 밝혀지면 OO부가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을 선동해서 C학생의 부모를 모함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개인 레슨 혐의도 받았는데, 2014년부터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A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20분에 20만 원의 금액을 받고 개인 레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초등학교에 채용된 코치가 해당 학교학생들을 영리 목적의 과외를 하고 받은 비용은 불법찬조금에 해당되고 선수들 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전임코치 D씨는 2015년 소년체전 서울대표선발전 당시 상대적으로 기량이 우수한 5학년 학생을 6학년 학생에게 져주라는 지시를 하여 승부조작을 강요하였다.

한편 B씨는 선수 폭행과 불법 개인 레슨 사실을 모두 부인, 소환도 거부한 채 "영장을 가지고 와라.", "수사권이 있느냐.",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소명을 거부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처분과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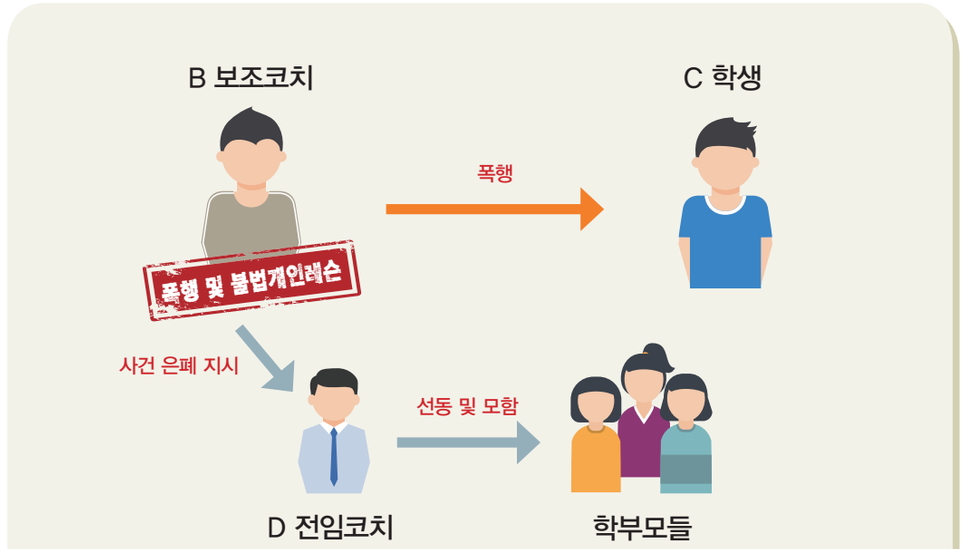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장에게 대한OO협회장으로 하여금 선수폭행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을 받은 보조코치 B씨와 상습적 선수폭행 및 승부조작을 강요한 전임코치 및 OO시 협회 이사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요구하여 진행 중에 있음.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폭행)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case 7

선수 폭행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게 한 코치,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사건 덮기에 급급한 연맹

2013년 9월 OO국가대표 코치 A씨는 음주상태에서 B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선수 5명을 훈련장소 무단이탈을 이유로 폭언과 구타를 하였다. 동 사실을 OO연맹 임원에게 보고하였으나 OO연맹은 A코치가 B선수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준 사실을 확인하고 A코치와 B선수를 함께 전지훈련에 보냈다.

그러나 독일 전지훈련 중 B선수가 부당한 대우와 집단따돌림으로 훈련을 할 수 없다며 훈련장을 이탈한 후 귀국하였다.

이 사건으로 연맹에서 B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B선수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동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합의부는 전 OO국가대표 선수 B씨가 국가대표팀 코치 A씨와 대한OO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맹은 B씨에게 내린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무효로 하고, 연맹과 A씨 등은 B씨에게 1천 3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전부터 국가대표 선수 B씨는 지난 2012년 11월 러시아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소치 경기장 인근 숙소에서 연습하던 중 대표팀 코치 A씨로부터 짐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OO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맞았고 2013년 8월 평창 OO경기연습장에서 훈련하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맞았고, 다음 달 동료들과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맞고 자동차에 머리를 짓눌리는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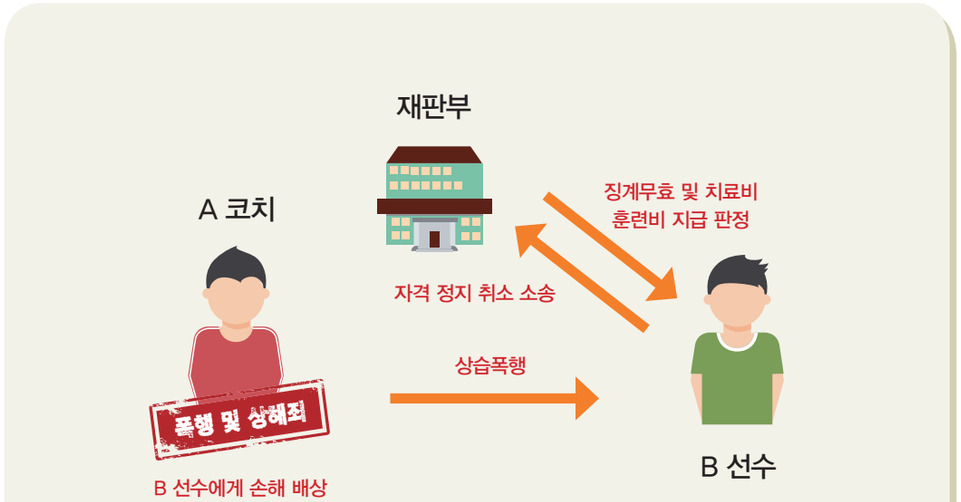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는 OO연맹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폭행사건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연맹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을 중징계 조치하고, A코치는 향후 국가대표 코치 지도자 선임을 금지토록 조치 요구하였음.

* 그러나 연맹에서는 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경징계(견책) 조치를 하여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는 경징계 조치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재요구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를 확정하였음.

* 이와 함께 B선수의 국가대표활동 중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연맹차원의 B선수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8

충성맹세 안 했다고 **60대 연맹회장 폭행**, **큰 문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회장

대한OO 회장이 산하연맹 임원이 충성맹세를 안했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대한OO 회장은 강원도 일원에서 회식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내 연회장으로 산하 연맹회장과 감사를 맡고 있는 A씨를 불러 충성맹세를 요구하였다. A씨가 충성맹세를 거부하자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A씨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하였다. 동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였다.

대한OO 회장은 인천 아시안게임 때에도 AD카드 없이 지인들을 대동하고 입장하다가 제지를 받자 협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신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여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조직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군림하는 행태를 보인 전형적인 조직사유화 사례이며 폭력을 동반한 사건이었다.

▶ 조치사항

*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폭행)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9

협회 직원, 장애인 선수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 및 **갈취**

OO시 장애인생활체육회 A직원은 뇌성마비 장애인선수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선수를 계속하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6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갈취하였다.

A직원은 평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머리를 수시로 쥐어박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는 등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수시로 폭행을 하였고, B씨가 경기에서 지면 휠체어에서 내리도록 하여 경기장 바닥을 구르게 하거나 기어 다니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도 수시로 자행했다.

경기 또는 훈련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 단독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선수 B씨를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길에 방치하고 귀가하여 B씨의 기본적인 건강이나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A직원은 장애인생활체육회의 지도자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장애인 선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행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폭행 · 공갈 ·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영구제명 되었다.

또한 OO종목 C코치는 여성 선수에게 “활동 보조인이 지원되지 않으면 내가 목욕도 시켜주고 용변도 처리해 주겠다.”고 말해 선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D코치는 훈련 중 선수들에게 자세를 설명하다 특정 선수에게 “가슴이 크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E수석코치는 선수와 선수 누나에게 휠체어 등 훈련용품 구입비로 2010년부터 2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565만원을 자신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의 부실한 조치도 지적되었다.

장애인 체육회는 폭력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고, 가맹단체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선수 이름을 노출해 선수들에게 2차 피해를 끼치는 등 부적절하게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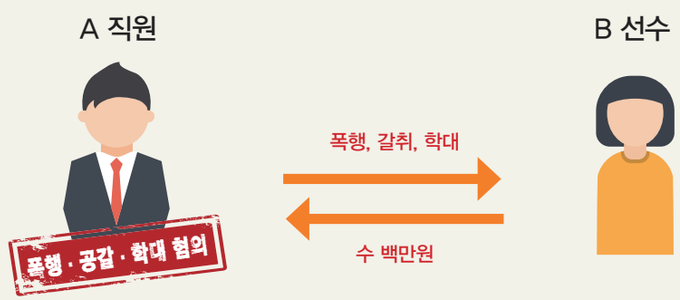

▶ 조치사항

* 폭행 · 공갈 · 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성추행, 성희롱 행위를 가한 선수 · 지도자는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을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10

경기장 관계자 폭행한 현직 감독, 결국 감독직에서 물러나

전 선수이자 현재 OO팀 감독인 A씨는 경기장에서 민간인 B씨를 폭행하여 감독직을 박탈당했다.

A씨는 자신의 국가대표 팀이 출전한 경기를 관중석에서 관전하면서, 심판 판정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경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몹시 흥분하여 경기장에 들어가려 시도했고, 이때 옆에 있던 민간인 B씨가 A씨를 말리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격렬한 몸싸움을 펼쳤고, 이후 경호원과 관계자 그리고 선수들이 나서서 싸움을 말렸다.

B씨는 당시 경기장을 관리하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이후 A씨의 팀은 사건이 벌어진지 하루 만에 A감독이 이번 폭행으로 사령탑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조치사항

* 소속팀으로부터 계약 해지 조치.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폭행)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case 11

초등생 성추행 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한 운동교실 강사에게 실형 선고

OO의 한 운동교실에서 수강하던 A학생(13세)을 성추행한 60대의 운동교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B교사는 2012년 7월 손가락으로 A학생의 가슴을 찌르고 엉덩이를 주무르기도 했고, 휴게실로 A학생을 유인, 입맞춤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

A학생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없어 고민하다가 결국 한달 만에 운동교실을 그만두고 말았다. 이후 B교사의 몹쓸 짓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A학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성추행은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후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다.

A학생은 법정에서 비교적 침착하게 피해내용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별도의 발언기회를 신청하여 B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반면 B교사는 오히려 A학생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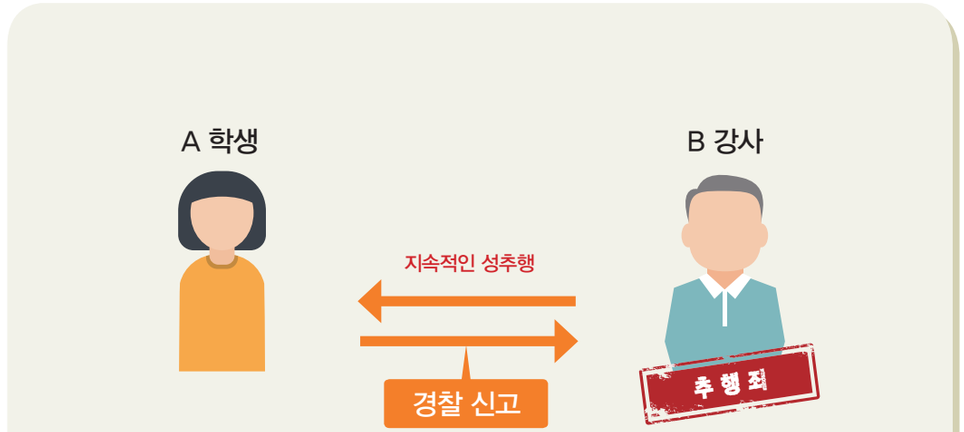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선고.

* 대한체육회 이하 시 ·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의 규정에 따라 성추행 · 성폭행, 폭언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수지도자는 경미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5년 미만,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의 징계를 하게 되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12

10대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강사, **징역 8년, 개인신상정보 공개 5년** 선고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 OO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OO강사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제주도 한 민박집에서 제자인 B(당시 14세)양에게 "OO를 잘 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같은 해 7~8월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고, 상당 기간 범행이 반복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부모와 지인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합리적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사례는 스포츠지도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선수를 성추행, 성폭행한 것으로 엄벌에 처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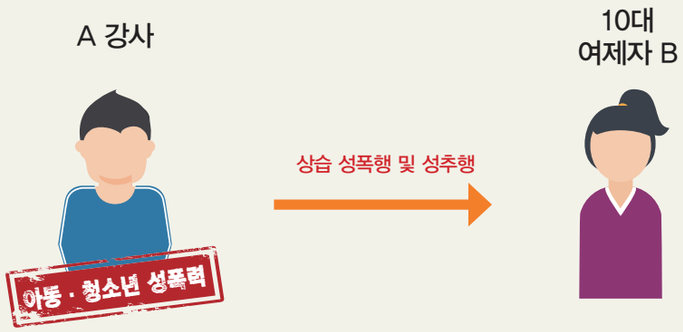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명령.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성폭력을 가한 선수 · 지도자 · 심판 · 임원의 경우 바로 영구제명하고, 직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13

마사지 빙자한 성추행,
국가대표 감독 보직 해임 1개월

국가대표 A감독은 2013년 5월 국가대표 훈련도중 허리를 다친 국가대표선수 B양을 본인이 직접 물리치료를 해 주겠다며 치료실로 데리고 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B양의 엉덩이와 치골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A감독은 나름대로 선수 보호관리 차원에서 아픈 선수를 치료해 준 것 뿐이라고 말하였다. OO국가대표팀에는 의무트레이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감독이 여자선수를 직접 물리치료 한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OO연맹 선수위원회에서는 A감독에 대해 영구제명 의결을 하였으나, A감독의 재심청구에 따른 선수위원회 재심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인 B양 측에서 대한체육회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동 사건을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one-stop지원센터로 이첩하고 결과를 확인 후 처리토록 한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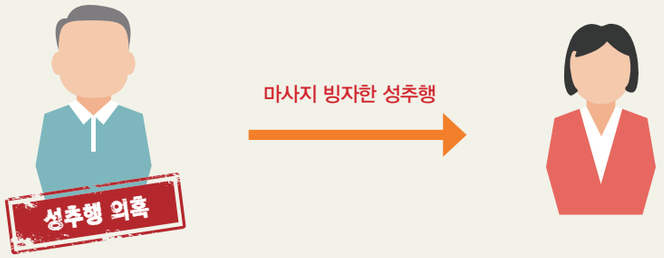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연맹은 1개월간 보직에서 해임하고,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는 경찰의 one-stop지원센터의 조사결과 무혐의 결과가 나왔으나 해당 감독에 대해 엄중 경고처리를 함.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성추행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수 지도자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14

계약직 선수 **상습적**으로 **추행**한 감독, **집행유예 선고**

OO시청 감독 A씨가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OO의 한 OO장 등에서 훈련을 지도하다가 B씨를 비롯해 선수 2명(C, D)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훈련 도중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전 OO시청 감독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특히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선수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 조치사항

* 성추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전 OO시청 감독 A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됨.

*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성추행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수 지도자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폭행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04

승부조작/편파판정

내가 하면 의리이고,
남이 하면 비리입니까?

우리끼리니까, 아는 사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은 이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포츠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행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종목마다
엄정한 룰이 있고, 스포츠맨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은 스포츠맨들의 이러한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범법행위입니다.
누가 저지르든,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은
의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 승부조작/편파판정 관련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47조(벌칙)**
  -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를 모두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 제2항(징계의 정도 결정)**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직원	•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

※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조직사유화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

case 1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진 프로선수들, 승부를 직접 조작하여 불법이득 취득

국군체육부대에서 같이 군생활을 했던 프로선수들이 제대 후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한 뒤 특정 경기에서 고의로 실수를 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들의 승부조작은 고의 실수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선수 개인별 비중이 큰 종목을 선택하여 이루어졌고, 해당종목 선수가 고의 실수를 하여 팀이 패배하면 도박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승부조작에 많이 개입하는 브로커 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였고, 자신의 종목이 아닌 타인의 종목에 베팅하여 승부조작을 시행함으로써 의심을 피해왔다. 이들에 의한 승부조작은 해당 팀의 감독도 승부조작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료 선수들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실수로 보인다는 증언을 하면서 승부조작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가담 선수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해당 경기협회에서는 별도의 자체 징계를 진행하였다.

▶ 조치사항

* 해당 선수 검찰 송치. 협회 차원에서 자체 징계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를 위해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는 무조건 영구제명하고 해당 구단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책임성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승부조작, 불법도박의 혐의가 있는 경우 각 연맹과 단체가 아닌 별도의 상벌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시절부터 스포츠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2

현역 시절엔 **승부조작**과 **불법 베팅**, 영구제명 이후엔 **불법사이트 운영**

프로OO선수인 C는 승부조작 브로커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은 후배 선수B가 건넨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불법행위를 약속한 C는 경기에 출장했고, 팀은 '예정대로' 크게 졌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전 소속팀에서 친분을 쌓은 선배 선수D에게 승부조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흘려 선배가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일조했다.

프로OO 승부조작 수사에 나선 OO지방검찰청은 "승부조작에 가담했거나 불법 베팅한 혐의로 현직 프로OO선수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선수가 포함된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C에게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C는 복귀를 잠시 꿈꿨으나, OO계에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었다. 영구제명 징계는 풀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 후, OO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 도박장 개설 등)로 총책 E, 조직폭력배 F 등 11명을 구속(38명 검거)했는데, 여기에 C도 있었다. 일당은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1만 3000여명을 상대로 판돈 1조 3천억원을 받아 약 2천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는 체포 당시 자신은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자금조달 및 세탁, 회원 알선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일당은 수익금 중 일부(722억원)로 국내외 카지노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15개 회사에 투자한 사업가 행세를 했고, 명품시계와 고급 외제 승용차, 1억원 상당의 귀금속도 사들였다.

OO경찰청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공범인 C의 불법행위가 포착된 사실은 맞다. 현재 범죄수익 152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도 추적 중이다. 잡히지 않은 공범 12명은 인터폴 등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8개 조직폭력배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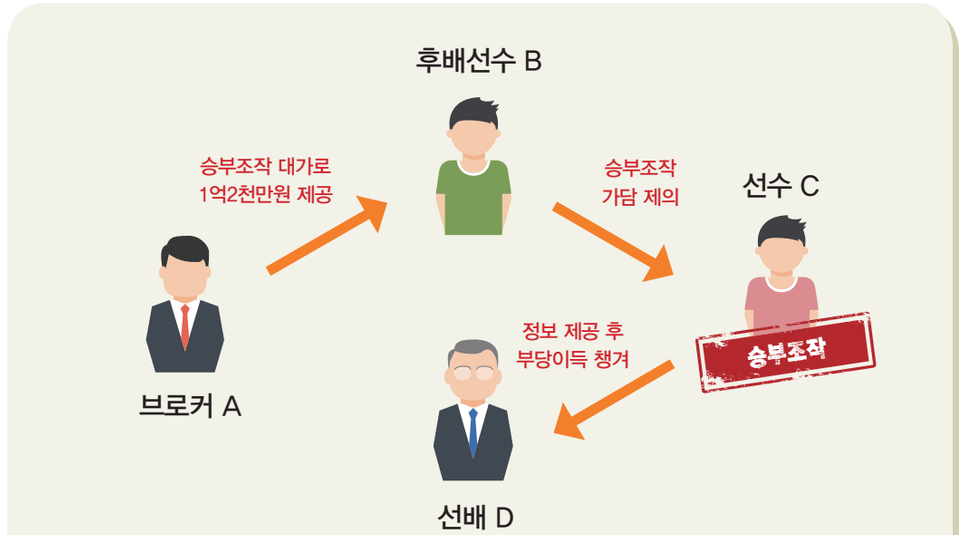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선수C는 영구제명. 경찰이 확대 수사 중임.

* 문화체육광광부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를 위해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는 무조건 영구제명하고 해당 구단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책임성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승부조작, 불법도박의 혐의가 있는 경우 각 연맹과 단체가 아닌 별도의 상벌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시절부터 스포츠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3

억대 연봉 선수 **300만원 때문**에 **승부조작**, **전직 선수**도 브로커로 **개입**

프로OO선수 B씨가 2차례 승부 조작에 가담해 3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한 B씨는 OO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014년 고의로 실수를 해 승부조작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에 출석한 B씨는 승부조작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한 뒤 승부 조작 제안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OO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브로커로 전직 선수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는 4~5년 전 은퇴한 선수"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승부조작 가담 전 · 현직 프로OO 선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승부조작 당시 몸 담았던 구단도 이와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OO위원회는 B씨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렸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구단 활동(훈련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 종목에서는 과거에도 선수 2명이 승부 조작으로 영구 퇴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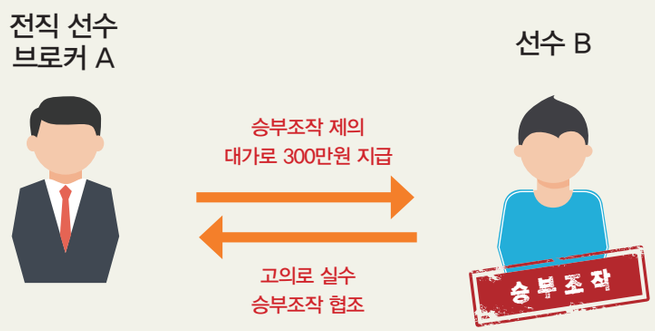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선수 B는 한국OO위원회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음. 현재 수사 진행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를 위해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는 무조건 영구제명하고 해당 구단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책임성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승부조작, 불법도박의 혐의가 있는 경우 각 연맹과 단체가 아닌 별도의 상벌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시절부터 스포츠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4

국가대표 선수가 **승부조작 지시**, **거절**하자 후배 **폭행**, **자격박탈**

국가대표 A선수는 같은 종목 선배의 우승을 위해 후배들이 패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선배인 B선수가 A선수에게 "A는 이미 국제대회 우승으로 군 면제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개인전 금메달을 따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을 위해 승부조작을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 중에 A선수는 자신을 위해 길을 트라는 B선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앞서 달리던 후배 C선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자, B선수는 A선수와 C선수를 불러내어 8시간 동안 감금하고 머리 등을 수시로 구타하였다.

조사가 시작되자 C선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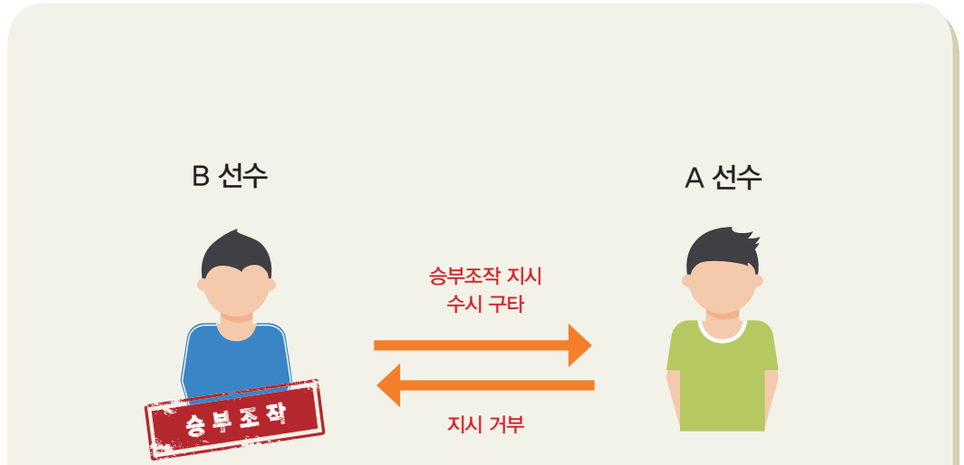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선수 B는 국가대표자격을 박탈당함.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의 위반행위를 한 선수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처분되며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벌 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함.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5

아들의 **대학 입시** 위해, 현직 대학 감독이 **승부조작**

B대학교 OO부 A감독은 아들을 B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회 우승 실적이 필요했다. 그러나 A감독의 아들은 OO을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보자 수준으로, 대회출전 자격을 얻기도 어려운 실력이었다. 그러자 A감독은 대회에서 자신의 후배인 타 학교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각 학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학생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범위에서 A감독의 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각 학생선수들은 시합포기 및 1분 이내의 승리 유도로 A감독의 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A감독의 아들은 해당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 우승 실적으로 A감독의 아들은 B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뒤늦게 이러한 정황에 대해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결과 A감독과 상대학교 감독들이 승부를 조작하여 A감독의 아들을 우승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B대학교 입학사정관은 A감독의 아들을 입학취소 처리하였고, 업무방해죄로 A감독을 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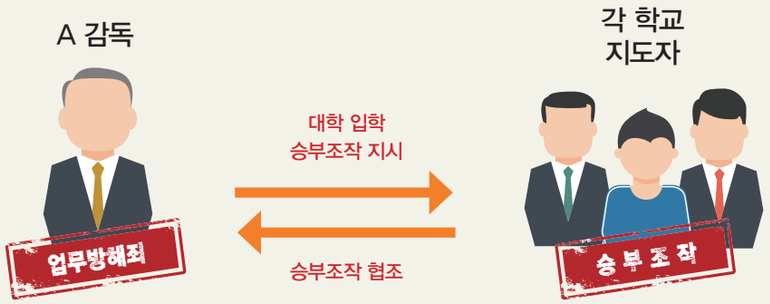

▶ 조치사항

* B대학에서 아들의 입학을 취소하였고, A감독은 업무방해죄로 고발됨.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시 ·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시 · 도지부규정에 따라 불법도박이나 승부조작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case 6

조폭 및 브로커 가담한 검은 뒷거래, 프로 감독과 선수 모두 가담한 사상 최대 규모

1. 프로OO 감독의 승부조작 가담

– 2011년 브로커 2명으로부터 총 4천 700여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실형 선고.

2. 프로OO 선수의 승부조작 가담

– 고교선배이자 브로커(대학선수 출신)와 짜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당 500만원씩 총 1천 만원을 받고 경기에서 고의로 실수한 것처럼 하여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실형 선고.

– 해당선수들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각 500만원, 700만원.

3. 사상최대의 승부조작 사건

– 2011년 불법베팅사이트와 조폭 등이 동원되어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책성 플레이를 하는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원과 1억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부조작을 강요하는 조폭의 협박에 못 이겨 해당 선수의 자살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

– 이후 대대적인 수사로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던 선수 2명이 더 자살.

– 검찰 결과 1차에서 선수 4명 구속, 11명 영구제명, 2차에서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선수 40명, 브로커 7명에 대해 영구 제명 처벌을 내렸으며, 이 중 25명은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함. 이들은 가담정도에 따라 보호관찰(2~5년) 및 사회봉사(200~500시간)를 하도록 함.

4. 승부조작과 불법스포츠도박에 연루

– 2015년 OO지방경찰청 제2청은 프로OO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OO선수 12명, OO선수 13명, OO선수 1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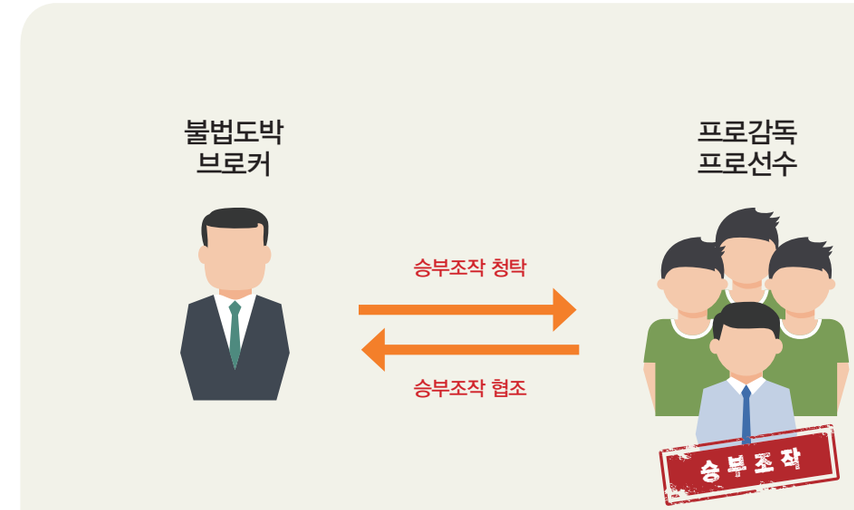

▶ 조치사항

* 관련자들은 체육회 및 협회로부터 영구제명 되었고, 징역 6개월 등 실형을 선고 받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를 위해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는 무조건 영구제명하고 해당 구단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책임성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승부조작, 불법도박의 혐의가 있는 경우 각 연맹과 단체가 아닌 별도의 상벌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시절부터 스포츠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7

조직폭력배와 결탁 **18경기 승부조작**, **정보 유출**로 **불법 이득** 취득까지

A씨 등 제주OO 소속 선수 5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직폭력배 B씨와 사설OO 운영자 C씨 등으로부터 1억 450만원을 받고 18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수들은 출발을 늦추거나 경주 중 고의로 실수하는 방법 등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선수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되팔거나 직접 불법 사설OO에 돈을 걸어 이득을 챙겼다.

과천OO 소속 D씨 등 관리자들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4년 OO협회에서 '최고의 OO'로 선정된 D씨는 사설OO 운영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OO의 정보를 넘긴 대가로 3천 3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사설 OO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조직원 6명도 구속 기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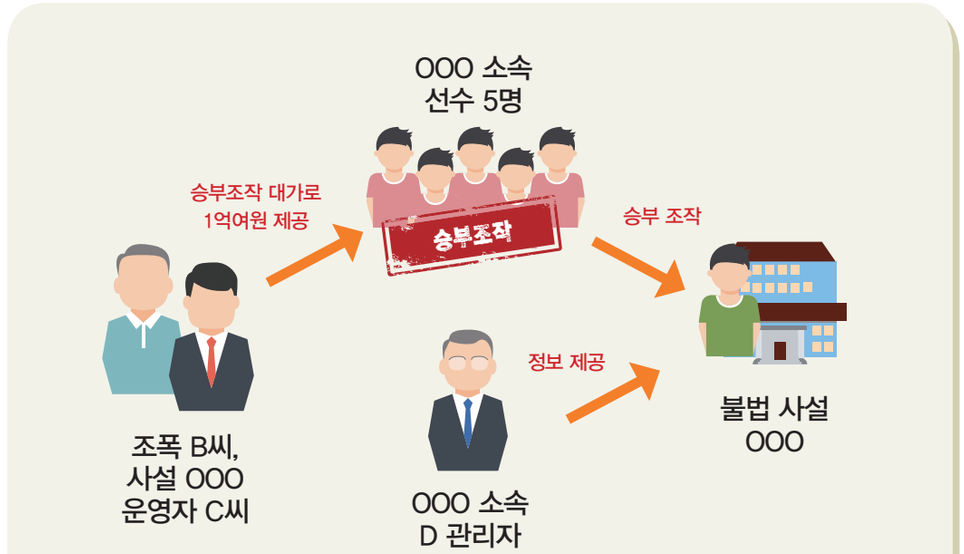

▶ 조치사항

* 관련자들 구속 기소 조치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를 위해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는 무조건 영구제명하고 해당 구단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책임성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승부조작, 불법도박의 혐의가 있는 경우 각 연맹과 단체가 아닌 별도의 상벌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시절부터 스포츠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8

구단 스카우트가 **심판매수**, **감독**이 책임지고 **사퇴**

프로OO A구단의 '심판 매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구단 감독 B씨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의를 표하면서 OO계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 A구단의 스카우트 C씨는 2013년 심판 2명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며 5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명문 구단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다른 구단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유명 감독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011년 승부 조작 파문 이후 5년 만에 닥친 대형 악재에 팬들은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프로OO 전 · 현직 심판 4명이 지역 관계자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 중 2명이 이번에 다시 비슷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한국 프로OO 심판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OO계 관계자는 "당시엔 심판에 따라 접대를 하거나 '목욕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에이전트는 "심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감독의 또 다른 능력이란 얘기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거액의 뇌물이 오간 본격 매수와는 다르다.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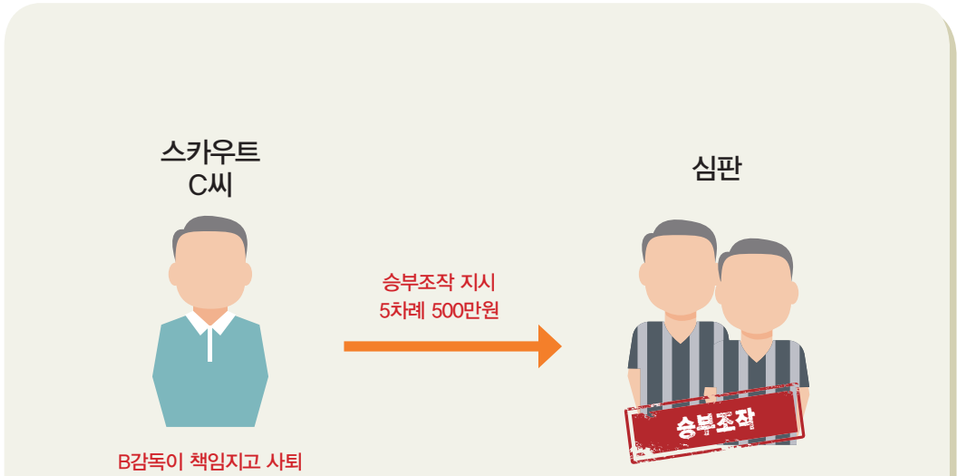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스카우트 C씨는 불구속 기소. B감독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를 위해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는 무조건 영구제명하고 해당 구단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책임성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승부조작, 불법도박의 혐의가 있는 경우 각 연맹과 단체가 아닌 별도의 상벌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시절부터 스포츠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9

점조직 형태의 치밀한 승부조작, 결국 승부조작 피해 학부모 자살, 인천에서 유사사례 또 발생

우리에게 가장 충격을 안겨준 대표적인 승부조작 사례는 2013년에 벌어진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OO대표 선발전이었다. 당시 5대 1로 이기던 모 선수는 경기 종료 50초 전부터 심판 G씨로부터 경고를 내리 7번이나 받자 크게 흔들렸고 결국 7대 8로 역전패했다.

이러한 편파판정으로 패배한 선수의 아버지 H씨는 인천에서 같은 종목의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천 지역 심판이던 G씨가 유독 편파판정을 심하게 한다고 여겨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 터였다. 그런데 어느새 G씨가 서울 지역 심판으로 나와 또 다시 아들의 경기를 망쳐놓은 것이다. 울분을 삭이지 못한 H씨는 며칠 뒤 G씨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때도 G씨가 단순한 '하수인'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H씨의 자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그날 경기에서 서울시 OO협회 사무국장이 연루된 조직적인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상대 선수 아버지인 모 대학 OO학과 교수 A씨가 중 · 고교 · 대학 후배인 모 중학교 태권도 감독 B씨에게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상 실적을 만들어 달라."고 청탁하면서 승부조작이 시작됐다. 청탁은 다시 서울시 OOO협회 C전무로 이어졌고, C전무의 승부 조작 지시는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D씨, 협회 심판위원장 E씨, 협회 심판부위원장 F씨를 거쳐 문제의 심판인 또 다른 G씨에게 건네졌다. 이는 철저한 점조직 방식으로 진행돼 심판 G씨는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협회는 매년 상임심판 100여명을 선정해 놓고 심판위원장이 심판 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당 6만~8만원을 받고 시합에 불려나가는 심판들은 이런 지시를 무시했다가는 어느 순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신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H씨 아들의 경기에서 이뤄진 편파 판정의 대가로 돈이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학교로 밀접한 연이 형성돼 있는 OO계의 특성상 학연 때문에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6년 8월에 인천에서 다시 벌어졌다. 인천광역시장기 OO대회 고등부 경기에서 이기고 있던 선수의 코치가 수건을 던져 기권패한 일이 벌어져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상대편 선수가 장학금을 받게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코치진 간의 담합에 의한 이른바 밀어주기식 승부조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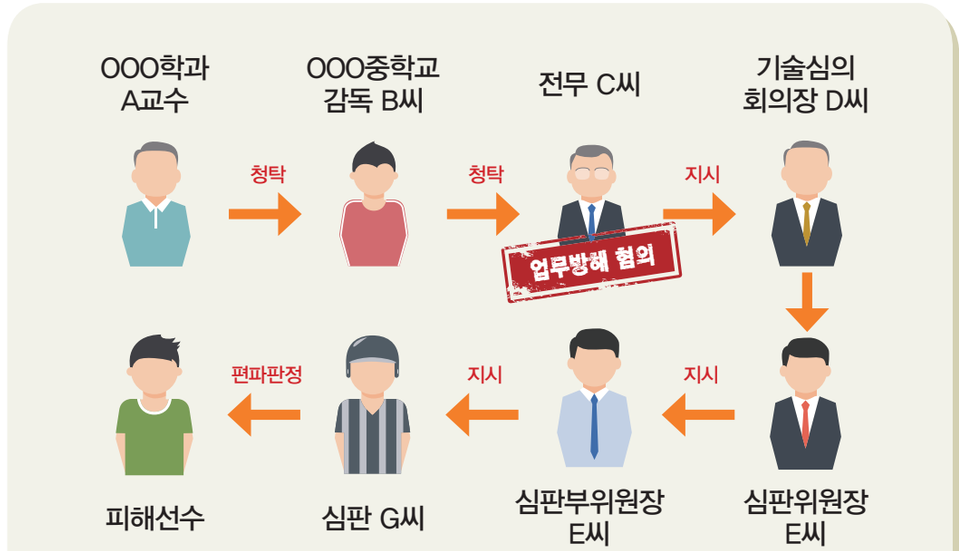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승부조작을 주도한 협회 전무 C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판 G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추가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추진 중임.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승부조작, 편파판정의 비위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처분하며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의 가중처분을 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함.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 협회 임원을 통한 심판매수로 승부조작 |

case 10

조직적인 승부조작을 시인하면서도 **관행**이라고 **변명**한 협회임원

전국체전 고등부에 출전할 OO시 대표 선발전에서 한 협회임원이 같은 대학 출신 협회임원에게 승부조작을 청탁하였고, 이 임원은 기술심의회 의장, 심판위원장 등을 거쳐 경기 3시간 전에 경기 심판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였다.

해당 경기단체에서는 승부조작을 의심하고 진상 조사를 하였으나, 심판 한 명을 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심판 개인의 승부조작이 아닌 조직적인 승부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승부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들은 승부조작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OO협회 전 임원은 "(승부조작의 대가로) 큰 대회는 5천만원, 그 이상을 주고받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승부조작 지시는 남녀 고등부 경기에 특히 많다."고 말함으로써 승부조작이 고질적인 현상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편파판정을 통해 승부를 조작한 심판의 경우에는 협회 및 심판위원장이 심판 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승부조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조치사항

* 관계자는 검찰에 의해 구속 및 입건되었고, 해당 경기단체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심판 한 명 제명함.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승부조작, 편파판정의 비위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처분하며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의 가중처분을 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함.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05

입시비리

입시비리, 유능한 다음 세대를
꺾어버리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유능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우리 스포츠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시비리는 유능한 다음 세대의 꿈을 꺾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내일을 이끌어갈
유능한 다음 세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맙시다.
입시비리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 범죄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 입시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 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체육진흥법의 벌칙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 제2항(징계의 정도 결정)**

라. 체육관련 입학 비리[1]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파면
	운동부[2]	• 대회 출전금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 · 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 · 학부모 · 소속 학교 · 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 · 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 · 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 입시비리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

case 1

브로커를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뇌물수수**, 대학교수가 **특기생**으로 **부정입학** 시켜줘

서울의 유명 대학교수 A씨는 대학 운동부 감독을 맡으면서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고등학교 감독의 소개로 운동부 학생의 학부모를 소개받아 해당학교 운동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으며, 검찰은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브로커도 수배하였다.

한편, 지난 2007년 C대 운동부 감독이 입학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조치사항

* 해당 교수는 구속.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7년 C대 운동부 감독이 입학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 받음.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관련 입학비리의 위반행위를 한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처분.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전담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을 구성 · 운영하여 입시 현장에서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우수선수 사전스카우트,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 · 승부 조작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비리 발생 원인별 대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 · 정비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입시비리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2

고향 **후배**의 **아들**을 위한 협회 간부의 **그릇된 배려**

OO경기협회의 A사무국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향 후배 B의 아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종목의 고교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향 후배 B는 아들의 경기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고교에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A사무국장에게 전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필요한 실적 증명서를 조작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A사무국장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출전횟수 및 기여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B의 아들이 발급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위조된 허위 경기실적을 발급해주었고, 그 결과 해당 선수는 OO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들은 발급기준에 벗어난 허위 경기실적증명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명서를 OO대학교 입학처에 제출하여 합격함에 따라 OO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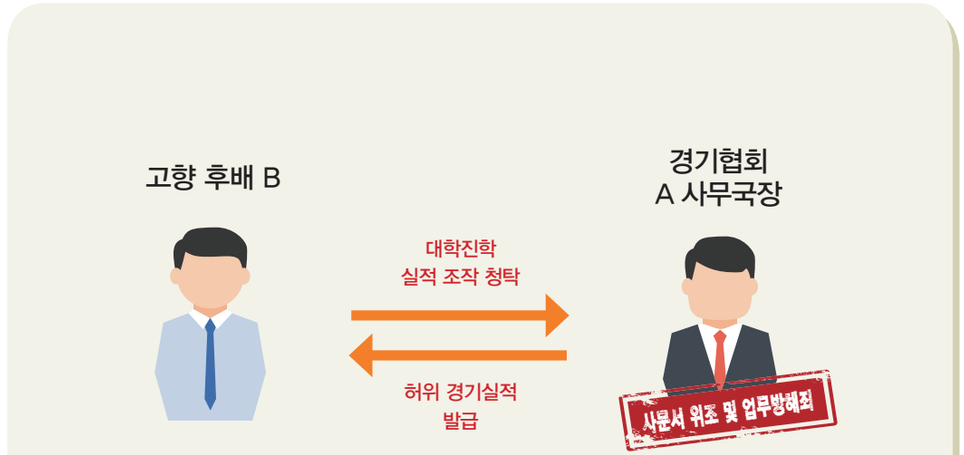

▶ 조치사항

* 해당 협회에서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장에게 해당경기협회 A사무국장 등 관련자에게 징계 요구함.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관련 입학비리의 위반행위를 한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처분.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입시비리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 협회 간부에 의한 증명서 허위 발급 및 접대사례 |

case 3

경기실적증명서 **위조**로 **대학입학**, 고교 감독과 대학 감독도 **허위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요청**

대한OO협회 사무국장 A씨는 2014년 9월 경기실적을 담당하는 협회 대리에게 OO고, OO고 OO선수에 대하여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실적을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발급된 '허위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나란히 입학하게 되어 입학비리를 유발하였다. 또한 고교감독 2명과 모 대학 감독도 문제가 된 두 고교선수의 OO특기자 선발을 위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대한OO협회 사무국장 A씨에게 부탁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제 경기결과를 근거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발급하여야 하고 OO협회는 '전국대회 기간 중 OO는 OO 이상 OO하여야 하고, OO는 OO을 완료한 선수에 한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에 대해 부하직원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발급을 강요하여 대학입학 전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고교감독 2명과 모 대학 감독은 문제가 된 두 고교선수의 OO특기자 선발을 위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대한OO협회 사무국장 A씨에게 부탁하여 부정발급 받았다.

이에 대한OO협회는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 처분하였다. 또한 고교감독 2명과 대학교 감독에 대해서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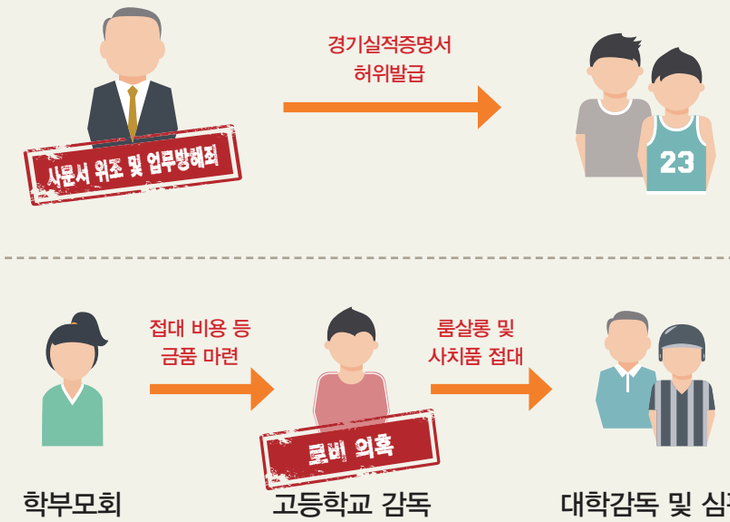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대한OO협회에서는 사무국장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다. 고교감독과 대학감독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1조(우선 징계처분) 내지 제24조(징계대상 종류)에 따른 고교감독과 대학감독의 징계를 요구함.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관련 입학비리의 위반행위를 한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처분.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입시비리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4

상임이사가 학부모에게 **웃돈 요구**하고, 대표선수 **선발** 및 **특기생 입학 조작**

명문 체육대 입학 등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서 뒷돈을 받아 구속된 대한OO연맹 이사 A씨가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도 개입하는 등 '종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OO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속된 대한OO연맹 OO 상임이사 A씨가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초부터 같은 해 말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국제대회 대표선수 선발,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1억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2012~2013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대표선수로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문 체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려면 교수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학부모 2명에게서도 2011년 9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1천 60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2012년 6월에는 전직 OOO 국가대표 코치에게 '윗선 인사비' 명목으로 1천 500만원을 받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윽박질러 선수 부모로부터 7천 130만원을 뜯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서 좌우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했다. "A씨에게 돈을 준 학부모 자녀 대다수는 정상급 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선수층이 얇고 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종목 특성상 심판진 구성권을 지닌 A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기는 했으나 개인레슨비와 작품비, 활동비 등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조치사항

* 상임이사 A씨 구속.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관련 입학비리의 위반행위를 한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처분.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전담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을 구성 · 운영하여 입시 현장에서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우수선수 사전스카우트,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 · 승부 조작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비리 발생 원인별 대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 · 정비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입시비리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5

특기생 **입학 조건**으로 오가는 **검은 돈** 전 · 현직 **감독**과 **심판**까지 **연루**

A고교 감독 B씨는 소속 선수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대학운동부 감독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대가는 한 고교 운동부 선수의 체육특기생 입학이었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대학 감독에게도 또 다른 학부모가 준 5천만원을 건네면서 그 아들의 대학진학을 부탁하였으며, 브로커 및 대학 감독과 친분이 있는 협회 소속심판을 전달자로 하여 대학진학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전달하였다.

검찰은 돈을 받은 감독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OO지역 대학 운동부 전 · 현직 감독 4명과 OO지역 고교 운동부 감독 2명, OO협회 심판위원 1명, 학부모 4명을 기소했다.

또한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대상인 대학 9곳 모두에서 선수 72명을 뽑기 위해 29억여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 대학은 고교 선수 7명을 데려오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으로 5억원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비용은 대학들에서 가지도 않은 해외전지훈련을 갔다 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뒷돈을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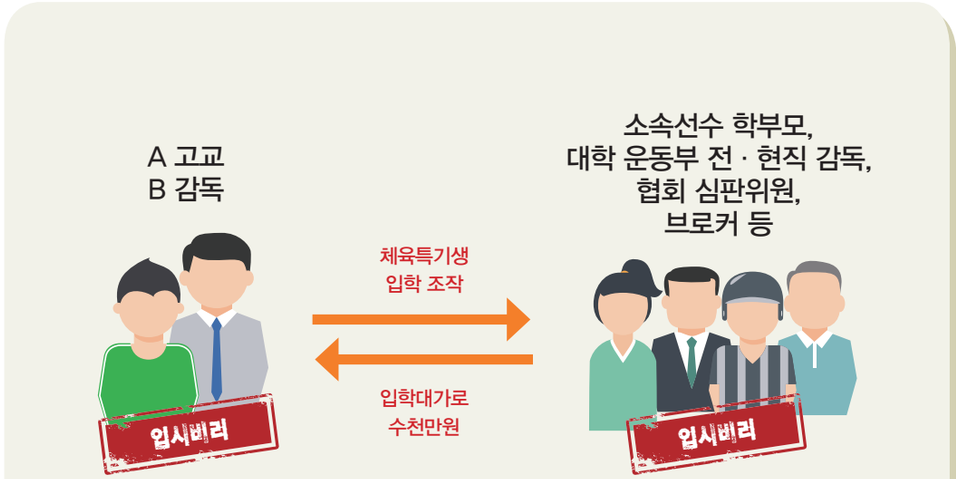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돈을 받은 감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 OO지역 대학 운동부 전 · 현직 감독 4명과 OO지역 고교 운동부 감독 2명, OO협회 심판위원 1명, 학부모 4명을 기소.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관련 입학비리의 위반행위를 한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처분.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전담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을 구성 · 운영하여 입시 현장에서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우수선수 사전스카우트,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 · 승부 조작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비리 발생 원인별 대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 · 정비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입시비리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6

학생들을 **대학**에 **끼워넣고** **뒷돈** 챙긴 고교 감독

유명 선수출신 감독이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끼워 넣기'로 돈을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A고교의 K감독은 대학의 스카우트 대상인 우수한 학생들을 진학시키면서,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끼워 넣어 진학시켰고, 이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2명의 학부모로부터 총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K감독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 2곳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문제의 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수천만원씩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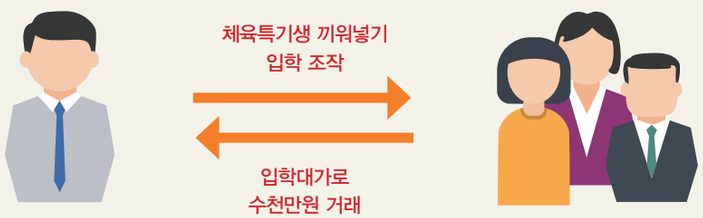

▶ 조치사항

* 감독 및 관계자들 실형 선고. 브로커 및 학부모 검찰 기소.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관련 입학비리의 위반행위를 한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처분.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전담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을 구성 · 운영하여 입시 현장에서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우수선수 사전스카우트,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 · 승부 조작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비리 발생 원인별 대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 · 정비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각 단체 정관에 따라 입시비리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case 7

금메달리스트의 **시험 부정행위**, 시험 **감독관**은 **못 본 체**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OO대학교 대학원 외국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12명이 응시한 대학원 외국어 시험에서 시험을 치르던 도중 감독관인 체육학과 A교수가 응시생 중 한 명인 금메달리스트 선수 출신에게 커닝페이퍼를 전달하였다.

부감독관인 교학처 직원에게 커닝페이퍼가 적발되었고,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0점 처리하고, 1년간 외국어 시험 응시자격도 박탈하였다.

당시 커닝페이퍼를 전달했던 A교수는 "운동으로써 학교를 빛낸 선수인데 답안지라도 채우라는 심정에서 대충 적어준 것이고, 합격을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금메달리스트 학생에게는 이미 조치가 취해졌으나, A교수에게는 학교 측에서 이렇다 할 처벌 등의 조치가 없어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OO대학교에서 부정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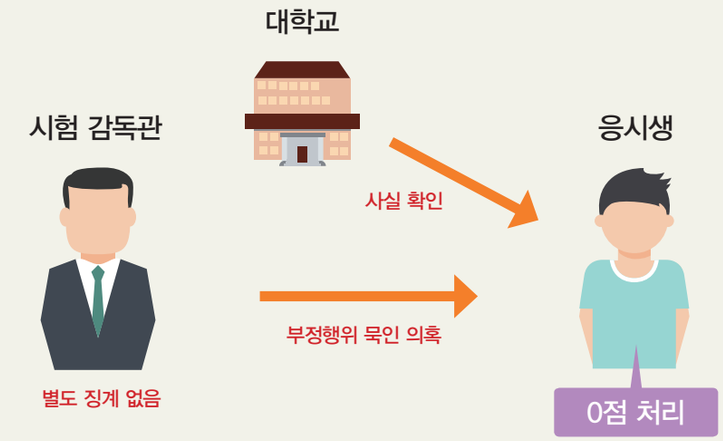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부정행위를 한 금메달리스트는 학교 측의 징계는 물론이고 금메달리스트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해당 종목단체협회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 특히,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OO대학교에서 감독관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부정행위를 조장한 A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던 것은 학교 측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아직도 숨어 있는 스포츠 비리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숨기고자 하는 스포츠맨들도 많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털어버립시다.
스포츠 비리로 고통 받고, 손가락질 받는
스포츠맨들이 없어질 때까지 한 마음으로 노력합시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멉니다.
그러나 그 길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 · 편집	심 동 섭(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최 원 석(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 요 한(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집 필 책 임	김 대 희(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자 료 협 조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국민체육진흥공단
인 쇄 일	2106년 9월
발 행 일	2016년 9월
디자인 · 인쇄	모노플레인

※ 이 사례집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며,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16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 out permission.